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등 기 특 별 회 계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병 섭

목 차

Ⅰ. 개관 ····· 1

1. 총괄 ····· 1

(1) 총수입·총지출 ····· 1

(2) 예산안 ····· 3

(3) 기금운용계획안 ····· 4

2. 일반회계 ····· 5

(1) 세입 ····· 5

(2) 세출 ····· 6

3. 등기특별회계 ····· 9

(1) 세입 ····· 9

(2) 세출 ····· 10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12

(1) 수입 ····· 12

(2) 지출 ····· 13

5. 국유재산관리기금 ····· 15

Ⅱ. 검토의견 ····· 17

1. 총괄 ····· 17

(1)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관리 대상 사업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 17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점역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33

2. 일반회계 ····· 39

《세 입》 ····· 39

(1) 토지대여료 ····· 39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39

(나) 실제 수납액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39

《세 출》 ····· 42

(2) 본부기본경비 ····· 4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42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42

(3) 사법업무전산화 ····· 4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48

(나)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사업 일부 기능의 대국민 공개 필요 48

(다)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53

(라) 네트워크 공사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57

(4)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6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60

(나) 과다 편성된 임차료 감액 필요 ····· 60

(5)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 6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65
(나) 법원 판례 검색 등 정보제공 플랫폼의 통합 방안 마련 필요 ····· 65
(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 7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70
(나) 법정언행컨설팅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단년도 방식에서 다년간 평가·환류 방식으로 개편 통해 실질적인 법정언행 개선 필요 ····· 71
(7) 재판절차비용지원 ····· 76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76
(나) 진술조력인의 상근/비상근 이원적 운용 고려해 감액 필요 ····· 77
(8) 전문재판운영 ····· 8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82
(나)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 법원시설공사 위한 예산을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세부사업으로 이관 및 자산취득비 감액 등 필요 ·· 83
(9) 법원시설관리 등 ····· 9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92
(나)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92

3. 등기특별회계 ····· 97
《세 입》 ····· 97
(1) 토지 대여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97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97
(나) 합리적 추계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 98
《세 출》 ····· 101
(2) 등기소 신·증축 ····· 1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101
(나)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사업 임차료 예산액 조정 필요 ····· 101
(3) 등기업무 전산화 ····· 104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104
(나)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료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액 검토 필요 ····· 104
(4) 등기업무운영지원 ····· 108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108
(나) 업무자료 발간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추계 및 조정 필요 ····· 108
(5) 예비비 ····· 11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111
(나) 집행 실적이 없는 예비비 편성 타당성 재검토 필요 ····· 111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115
《지 출》 ····· 115
(1)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115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15
(나) 보조사업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15
(2) 소년보호 등 지원 ····· 121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21
(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지출계획안 조정 필요 ·· 122
(3) 민원서비스 개선 ····· 127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27
(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의 법정 시한 내 도입을 위한 집행 철저 필요 · 127
(4) 사법서비스 향상 ····· 132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32
(나) 개원 시기에 맞추어 적정 수준의 운영비 편성 필요 ····· 133

▣ 참고자료

1. 법원 조직도 ····· 137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 138
3. 전국법원 사건통계 ····· 140
4. 성과지표 현황 ····· 141

Ⅰ. 개 관

1. 총 괄

(1) 총수입 · 총지출[1)]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그리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됨.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1조 872억 4,200만원으로, 2025년 9,606억 7,500만원 대비 1,265억 6,700만원(13.2%)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총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559억 4,000만원, 157억 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수입은 전년 대비 548억 4,500만원 증가하였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960,675	1,087,242	126,567	13.2
□ 예 산	729,896	801,618	71,722	9.8
- 일반회계	472,174	528,114	55,940	11.8
- 등기특별회계	257,722	273,504	15,782	6.1
□ 기 금	230,779	285,624	54,845	23.8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0,779	285,624	54,845	23.8

주: 총계 기준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임.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은 2조 5,001억 400만원으로 2025년 2조 3,122억 9,700만원 대비 1,878억 700만원(8.1%)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 총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12억 700만원, 71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지출은 전년 대비 694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합 계	**2,312,297**	**2,500,104**	**187,807**	**8.1**
□ 예 산	2,207,726	2,326,123	118,397	5.4
- 일반회계	1,977,639	2,088,846	111,207	5.6
- 등기특별회계	230,087	237,277	7,190	3.1
□ 기 금	104,571	173,981	69,410	66.4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4,571	173,981	69,410	66.4

주: 총계 기준

(2) 예산안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8,439억 8,600만원으로 2025년 세입예산 7,813억 4,400만원 대비 626억 4,200만원(8.0%)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예 산	781,344	843,986	62,642	8.0
- 일반회계	502,770	555,469	52,699	10.5
- 등기특별회계	278,574	288,517	9,943	3.6

주: 총계 기준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3,773억 6,300만원으로 2025년 세출예산 2조 2,562억 1,300만원 대비 1,211억 5,000만원(5.4%)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예 산	2,256,213	2,377,363	121,150	5.4
- 일반회계	1,977,639	2,088,846	111,207	5.6
- 등기특별회계	278,574	288,517	9,943	3.6

주: 총계 기준

(3) 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5,722억 1,900만원으로 2025년 계획 3,902억 6,600만원 대비 1,819억 5,300만원(46.6%)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266	572,219	181,953	46.6
- 수 입	390,266	572,219	181,953	46.6
- 지 출	390,266	572,219	181,953	46.6

주: 총계 기준

2. 일반회계

(1) 세 입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554억 6,9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 5,027억 7,000만원 대비 526억 9,900만원(10.5%)이 증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은 3,984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6억 9,500만원(15.6%)이 증액되었으며,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안은 27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4,100만원(△10.6%)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502,770	555,469	52,699	10.5
관유물 대여료	4,164	4,261	97	2.3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50	64	14	28.0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5	105	-	-
변상금 및 위약금	247	546	299	121.1
기타경상이전수입	122,307	124,142	1,835	1.5
면허료 및 수수료	344,804	398,499	53,695	15.6
잡수입	497	497	-	-
등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0,596	27,355	△3,241	△10.6

(2) 세 출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888억 4,6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1조 9,776억 3,900만원 대비 1,112억 700만원(5.6%)이 증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안은 1조 5,106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1억 2,500만원(8.4%)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안은 92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00만원(2.4%)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예산안은 4,858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1,900만원(△1.6%)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1,977,639	2,088,846	111,207	5.6
인건비	1,393,531	1,510,656	117,125	8.4
기본경비	90,168	92,369	2,201	2.4
사업비	493,940	485,821	△8,119	△1.6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부 인건비, 소속기관 인건비, 사법운영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 하에 일반 인건비, 정책연구원 인건비, 도서관 인건비, 연수원 인건비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은 사법

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하였고, 정책연구원 인건비 및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이 신설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1,977,639**	**2,088,846**	**111,207**	**5.6**
본부 인건비	1,370,174	1,480,113	109,939	8.0
일반 인건비	1,370,174	1,480,113	109,939	8.0
소속기관 인건비	23,357	30,543	7,186	30.8
정책연구원 인건비	-	6,000	순증	순증
도서관 인건비	6,901	7,238	337	4.9
연수원 인건비	9,441	9,832	391	4.1
교육원 인건비	7,015	7,473	458	6.5
사법운영 기본경비	90,168	92,369	2,201	2.4
본부 기본경비	84,964	86,543	1,579	1.9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	460	순증	순증
도서관 기본경비	832	857	25	3.0
연수원 기본경비	2,717	2,779	62	2.3
교육원 기본경비	1,655	1,730	75	4.5
사법운영지원	128,836	135,534	6,698	5.2
본부운영지원	116,548	123,321	6,773	5.8
도서관운영지원	2,668	2,962	294	11.0
연수원운영지원	6,179	5,739	△440	△7.1
교육원운영지원	3,441	3,512	71	2.1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1,479	9,351	△2,128	△18.5
가족관계등록사무	11,479	9,351	△2,128	△18.5
사법업무전산화	102,938	116,436	13,498	13.1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사법업무전산화	72,740	82,846	10,106	13.9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23,000	30,177	7,177	31.2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	7,198	3,413	△3,785	△52.6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456	17,321	△135	△0.8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7,456	17,321	△135	△0.8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6,453	7,948	1,495	23.2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6,453	7,948	1,495	23.2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7,693	7,763	70	0.9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693	7,763	70	0.9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2,684	12,339	△345	△2.7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2,684	12,339	△345	△2.7
재판청구권 실현	139,803	82,956	△56,847	△40.7
재판절차비용지원	38,300	33,503	△4,797	12.5
재판일반경비지원	46,158	47,762	1,604	3.5
사법정책연구개선	1,945	1,691	△254	13.1
국선변호료지원	53,400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	순감
사실심충실화	2,296	25,196	22,900	997.4
전문재판 운영	2,296	25,196	22,900	997.4
법원예비금	140	140	-	-
법원예비금	140	140	-	-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70,837	6,675	10.4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70,837	6,675	10.4

3. 등기특별회계

(1) 세 입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885억 1,7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 2,785억 7,400만원 대비 99억 4,300만원(3.6%)이 증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은 2,640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1억 100만원(8.2%)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안은 150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900만원(△28.0%)이 감액되었음.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278,574	288,517	9,943	3.6
관유물대여료	324	344	20	6.2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59	681	22	3.3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	-
면허료 및 수수료	243,976	264,077	20,101	8.2
잡수입	7	2,472	2,465	35,214.3
고정자산매각대	1,406	1,406	-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1,330	4,504	△6,826	△60.2
전년도 이월금	-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20,852	15,013	△5,839	△28.0

(2) 세 출

○ 2026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85억 1,700만원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2,785억 7,400만원 대비 99억 4,300만원(3.6%)이 증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안은 1,39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1,600만원(4.4%)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예산안은 42억 7,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사업비 예산안은 939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400만원(1.5%)이 증액되었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278,574	288,517	9,943	3.6
인건비	133,234	139,050	5,816	4.4
기본경비	4,273	4,273	-	-
사업비	92,580	93,954	1,374	1.5
회계(기금)간 전출금	48,487	51,240	2,753	5.7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6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부 인건비, 기본경비, 등기업무지원 등 8개 단위사업 하에 등특 인건비, 등특 기본경비, 등기업무운영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을 등기업무전산화 사업과 통합하였음.

<등기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278,574**	**288,517**	**9,943**	**3.6**
본부 인건비	133,234	139,050	5,816	4.4
등특 인건비	133,234	139,050	5,816	4.4
기본경비	4,273	4,273	-	-
등특 기본경비	4,273	4,273	-	-
등기업무지원	28,246	29,960	1,714	6.1
등기업무운영지원	24,086	25,350	1,264	5.2
건강보험부담금	4,160	4,610	450	10.8
등기업무전산화	55,716	59,076	3,360	6.0
등기업무전산화	33,388	30,951	△3,723	△10.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1,286	-	등기업무전산화와 통합	순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1,042	28,125	7,083	33.7
예비비	100	100	-	-
예비비	100	100	-	-
등기소 확충	8,518	4,818	△3,700	△43.4
등기소 신증축	8,518	4,818	△3,700	△43.4
회계 간 전출	30,596	27,355	△3,241	△10.6
일반회계 전출	30,596	27,355	△3,241	△10.6
회계 기금 간 거래	17,891	23,885	5,994	33.5
공무원연금기금 부담금	17,891	23,885	5,994	33.5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수 입

○ 2026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5,722억 1,900만원으로, 2025년 수입계획 3,902억 6,600만원 대비 1,819억 5,300만원(46.6%)이 증액되었음.

○ 수입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출연금' 계획안은 2,84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 9,800만원(23.8%)이 증액되었으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계획안은 2,556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2억 2,500만원(99.0%)이 증액되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항목별)	2025년도 예산(A)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390,266	572,219	181,953	46.6
변상금	300	347	47	15.7
민간출연금	229,942	284,740	54,798	23.8
기타경상이전수입	537	537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28,470	255,695	127,225	99.0
기금예탁원금 회수	30,000	30,000	-	-
기금예탁이자수입	1,017	900	△117	△11.5

(2) 지 출

○ 2026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5,722억 1,900만원으로, 2025년 지출계획 3,902억 6,600만원 대비 1,819억 5,300만원(46.6%)이 증액되었음.

○ 지출성질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계획안은 1,739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4억 1,000만원(39.9%)이 증액되었고,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3,682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5억 4,300만원(44.0%)이 증액되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성질별)	2025년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금액(B-A)	비 율
총 액	390,266	572,219	181,953	46.6
사업비	104,571	173,981	69,410	66.4
- 주요사업비	104,520	173,933	69,413	66.4
- 기금운영비	51	48	△3	△5.9
여유자금운용	255,695	368,238	112,543	44.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 사업별로 살펴보면, 2026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공탁업무 전산화,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서비스 진흥 등 5개 단위사업 하에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계획(A)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금액(B-A)	비율
합 계	**390,266**	**572,219**	**181,953**	**46.6**
공탁업무 전산화	2,416	2,104	△312	△12.9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2,416	2,104	△312	△12.9
사법제도 개선 및 사법서비스 진흥	102,104	171,829	69,725	68.3
소송구조지원	6,857	6,857	-	-
조정제도지원	11,432	11,523	91	0.8
법률구조단체사업지원	3,879	3,713	△166	△4.3
소년보호 등 지원	9,207	8,764	△443	△4.8
민원서비스개선	32,237	31,486	△751	△2.3
사법서비스향상	13,894	14,869	975	7.0
국선변호료지원	24,598	94,617	70,019	284.7
기금운영비	51	48	△3	△5.9
기금관리비	51	48	△3	△5.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
여유자금운용	255,695	368,238	112,543	44.0
통화금융기관 예치	255,695	368,238	112,543	44.0

5. 국유재산관리기금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2011. 4. 1. 시행)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2011년도까지 대법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행되었던 법원시설 확충사업이 2012년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장관 총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대법원 공용재산취득 사업의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979억 4,900만원으로 2025년도 지출계획 913억 3,800만원 대비 66억 1,100만원(7.2%)이 증액되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대법원 공용재산취득 사업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도 계획		2026년도 계획안		구분
사 업 명	금액	사 업 명	금액	
합 계	91,338	합 계	97,949	-
청사시설 취득	20,989	청사시설 취득	9,636	계속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3,180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31,525	계속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	전주지법 남원지원 신축	110	계속
수원법원 위탁개발	12,800	수원법원 위탁개발	30,000	계속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1,000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900	계속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19,009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22,183	계속
창원가정법원 신축	154	창원가정법원 신축	2,410	계속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3,815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100	계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00	계속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615	계속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축	370	신규

○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함. 다만,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공용재산취득사업(대법원)'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2].

---

2)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Ⅱ. 검토의견

1. 총 괄

(1)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관리 대상 사업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 정부가 「국가재정법」[3]에 따라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4]의 첨부서류 중 대법원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대법원 소관 세부사업 중 '재정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등, 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소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관별(실·국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2개[5]로만 나뉘어 있어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각 프로그램의 성과가 우수한지 또는 미흡한지 여부가 환류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

---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4) 의안번호 제12630호. 2025. 9. 3. 제출.

5) 정부, 「2026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 p. 7.

법원 소관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성과관리 대상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1999년 시범 시행된 이후 2006년 전 부처로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등이 일치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제8조제9항)되었음.

2021년 12월 21일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까지 '성과관리(제4장의2)'라는 새로운 장이 신설[6]되면서 성과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됨. 정부의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7[7]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첨부서류인데, 각 부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설정하게 됨.

---

6)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신설 2021. 12. 21.>**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7)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과계획서는 사전에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설정·관리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는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는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8)]

○ 2026년도 정부가 제출한 성과계획서[9)]를 살펴보면, 성과관리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성과관리 실익이 작은 일부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본경비성 사업 뿐 아니라 재정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이하 <표>에서 음영 색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적용받은 사유는 기관이나 부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인 경직성 비용(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입장임.

8) 「2026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대한민국 정부, p. 1.
9) 상게서, p. 11.

<2026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비고
재판활동지원 (1100)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11,479	9,351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	7,693	7,763	
	사법행정효율성 증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2,684	12,339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재판청구권 실현	재판절차비용지원	38,300	33,503	
		재판일반경비지원	46,158	47,762	
		사법정책연구개선	1,945	1,691	
	사실심충실화	전문재판운영	2,296	25,196	
	법원예비금	법원예비금	140	140	예비비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1200)	법원시설관리 등	법원시설관리 등	64,162	70,837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사법정보화 운영 (1300)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72,740	82,846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23,000	30,177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7,198	3,413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정보화)	17,456	17,321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6,453	7,948	
사법행정 운영지원 (7000)	본부 인건비	일반 인건비	1,370,174	1,480,113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소속기관 인건비	정책연구원 인건비	0	6,000	
		도서관 인건비	6,901	7,238	
		연수원 인건비	9,441	9,832	
		교육원 인건비	7,015	7,473	
	사법운영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	84,964	86,543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0	460	
		도서관 기본경비	832	857	
		연수원 기본경비	2,717	2,779	
		교육원 기본경비	1,655	1,730	
	사법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116,548	123,321	
		도서관운영지원	2,668	2,962	
		연수원운영지원	6,179	5,739	
		교육원운영지원	3,441	3,512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28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6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22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67~73.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특별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비고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등기소 확충	등기소 신증축	8,518	4,818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사법정보화운영 (1300)	등기업무전산화	등기업무전산화 (정보화)	34,674	30,95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정보화)	21,042	28,125	
사법행정운영지원 (7000)	본부 인건비	등특 인건비	133,234	139,050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본부 기본경비	등특 기본경비	4,273	4,273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등기업무지원	등기업무 운영지원	24,086	25,350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	4,160	4,610	
	예비비	예비비	100	100	예비비
회계간거래(8000)	회계간전출	일반회계 전출	30,596	27,355	정부내부거래
내부거래지출 (8400)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17,891	23,885	정부내부거래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10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2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8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67~73.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기금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비고
재판활동지원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소송구조 지원	6,857	6,857	
		조정제도 지원	11,432	11,523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879	3,713	
		소년보호 등 지원	9,207	8,764	
		민원서비스 개선	32,237	31,486	
		사법서비스 향상	13,894	14,869	
		국선변호료지원	24,598	94,617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51	48	
사법정보화운영	공탁업무전산화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정보화)	2,416	2,104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30,000	30,000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55,695	368,238	보전지출

주 1: 음영(회색)으로 표시된 세부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주 2:

총 세부사업수	11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7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4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대법원」, 대한민국 정부, pp. 67~73.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사업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이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이고,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에 따라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을 수행하며,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이며,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사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고 증인지원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사업임에도, 단순히 '기본경비 또는 기본경비성 비용'이라는 이유로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

특히,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금액 251억 9,600만원은 전년 대비 229억원(997.4%)이 급증했는데, 증액된 229억원의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18억 3,000만원)** 또는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223억 9,700만원)** 등 2026년도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재정 사업이

편성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 또는 기본경비성 비용’이라는 이유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일반회계뿐 아니라, 등기특별회계 사업 중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도 일반등기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공사 관련 재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중 국선변호료 지원(1161-307) 사업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인신보호법」에 따라 국선변호 사업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된 946억 1,700만원 전액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타 헌법기관 또는 부처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성과관리대상 60개 중앙관서의 총지출 727조 454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은 427조 1,377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58.7%**인데,

대법원은 2026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 2조 5,001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액수가 2,879억원에 불과해 그 비율이 11.5%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2026년도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 비율이 각각 31.3%[10], 100%[11]인데, 특히 **헌법재판소** 소관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에 속하는 '국선대리인보수등', '재판활동운영지원', '재판자료확충' 등 사업이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26년 헌법재판소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5 예산	'26 예산안
헌법재판소운영	인건비	인건비	34,692	35,353
	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6,955	7,27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26	436
	재판활동지원	국선대리인보수등	127	121
		재판활동운영지원	671	597
	본부운영지원	본부운영지원	4,292	4,033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865	1,856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	565	604
		국제교류	614	555
	정보자료운영	재판자료확충	386	340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7,499	8,424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307	2,491
	예비금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주 1:

총 세부사업수	13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수	13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사업수	0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정부, pp. 32. 바탕으로 재작성

10) 총지출 8,009억원, 성과관리대상 사업 2,515억원
11) 총지출 및 성과관리대상 사업 621억원

이를 보면, 대법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이라는 사유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12].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요사업비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은 38.2%이라는 입장이나, 대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주요사업비임에도 61.8%에 해당하는 사업이 성과관리를 받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 세분화**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13]제3항에서는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14]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12) 참고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인건비·기본경비 또는 인건비·기본경비성 비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국회 : 위원회운영지원(1000-1032), 의회운영지원(2000-2031), 도서관운영지원(3000-3031), 예산정책처운영지원(4000-4031), 입법조사처운영지원(5000-5031)
헌법재판소 : 인건비(1000-1001), 기본경비(1000-1011), 본부운영지원(1000-1032),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00-1033), 예비금(1000-1036)

13)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4) 「국가재정법」상 장·관·항은 품목별 예산제도 하의 구분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는 각각 분야·부문·프로그램을 의미함.

있음.

정부는 위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을 우선 소관별로 구분한 후 국가재정활동의 기능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등 16개 분야 75개 부문으로 구분[15]하고 있음. 성질별 분류는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기관(국)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중앙관서는 기관(국)별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됨. 이때 '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이며,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야 함[16].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도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관리를 실시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조), 법원 이외

1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5. 3. p. 233.
16)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5. pp. 212-3.

에 법원행정처(제19조), 사법연수원(제20조), 사법정책연구원(제20조의2), 법원공무원교육원(제21조), 법원도서관(제22조)를 두고 있음.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직>

(2025. 8.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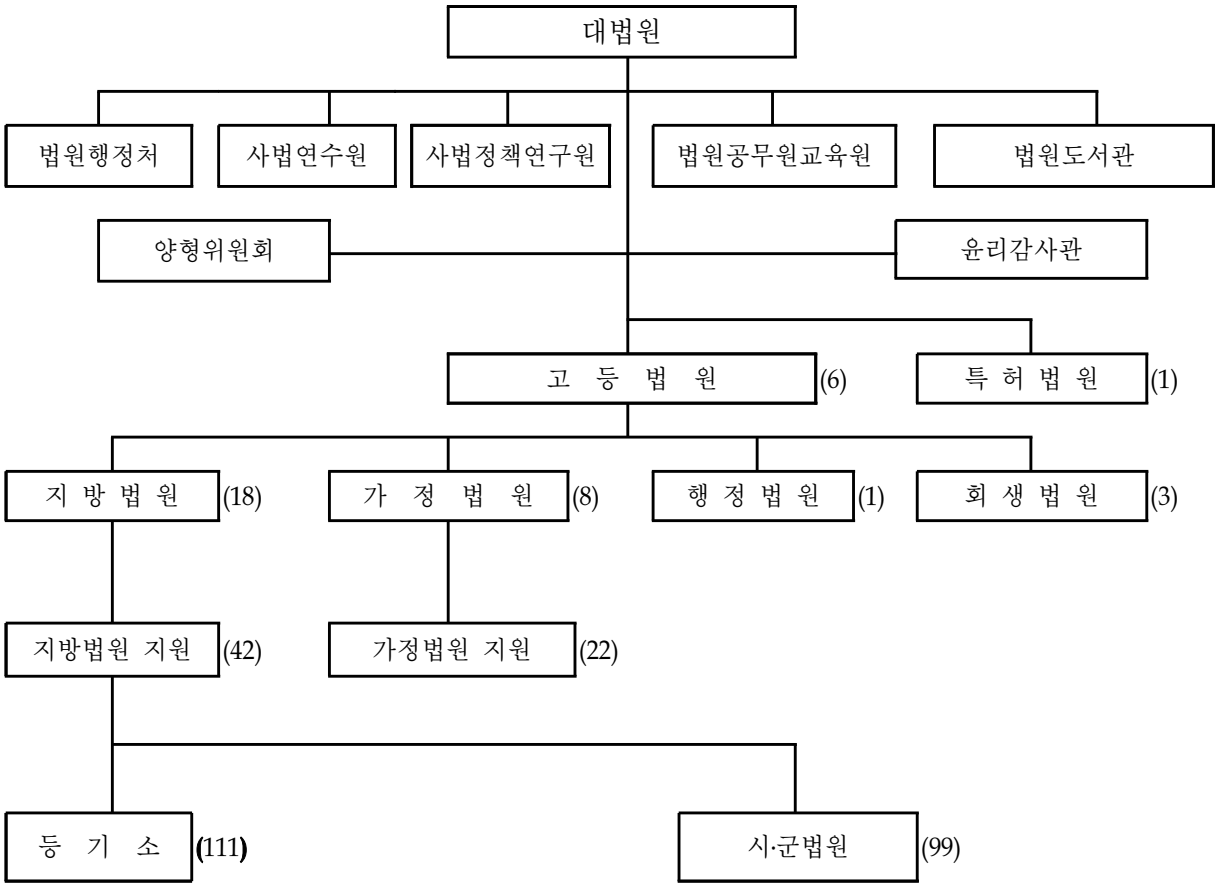

※ 각급 법원 현황
1. 총 법원 수: 102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 1, 회생법원 3, 지방법원 지원 42, 가정법원 지원 22]
2. 기관: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3. 시·군법원수: 99
4. 등기소: 111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

자료: 대법원 법원현황(제429회 국회(정기회) 대법원 등 소관 국정감사 자료)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

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법원 및 법원사무기구의 기관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은 기관(국)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17] 중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재판활동지원(1100) 프로그램'** 및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 등 총 2개에 불과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둔 취지와 달리 대법원의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2개에 불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우선,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체계[18] 하에서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재판활동지원(1100)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법행정의 효율성증진(1142-401),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17) 재판활동지원(1100),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사법정보화운영(1300), 사법행정운영지원(7000), 회계간거래(8000), 내부거래지출(8400),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여유자금운용(9700)

18) 정부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2022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사업수준을 지금까지의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체계를 1차적으로 변경했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하고 "부처의 성과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동 기본계획에서 「1 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전 부처 성과지표를 2022년 기준 1,000여개(프로그램당 2~3개)에서 500개(프로그램당 1개) 이하로 감축함.

전문재판운영(1144-407), 법원예비금(1148-330) 등 8개 사업인데,

그 중 재판청구권실현 단위사업(1143)에 해당되는 재판절차비용지원, 재판일반경비지원 및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19]'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특히, <2026년 대법원 소관 성과계획서상 일반회계 성과관리 현황>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 내 8개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사업(1140-361)'이 유일한데,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되는 '장단기 해외연수', '법원공무원·법관 단기 국외훈련', '국제회의 참가' 등 내용은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과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환류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법관 및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국외훈련・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가, 연임법관 연수 등을 추진함으로써 법관등의 개인역량 강화와 사법제도의 개선 및 서비스 증진의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법관등의 전문화 및 국제화를 제고하여 프로그램 1100[재판활동지원]의 성과

19) (전체 처리사건 수/전체 접수사건 수+미제사건 수)*100

지표인 ‘전체 사건처리율’을 도모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므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나,

그러나, 2026년도 대법원 성과계획서의 ‘전체 사건처리율’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를 살펴보면, 동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서 ‘장단기 해외연수’, ‘법원공무원·법관 단기 국외훈련’, ‘국제회의 참가’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① 전체 사건처리율

ㅇ 측정산식 : (전체 처리사건수/전체 접수사건수+미제건수)×100

ㅇ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6. 1. 1. ~ 26. 12. 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대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체 처리사건수, 전체 접수사건수, 미제건수 통계를 사법연감 및 전산자료를 통해 산출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 목표치는 24년 실적치 95.8%보다 높고, 3개년도(22년~24년) 실적치 평균 95.9% 보다 높게 설정) 26년 목표치는 25년 실적치 %보다 높고, 3개년도(23년~25년) 실적치 평균 % 보다 높게 설정

- 2021년 실적 96.4% = 처리 17,916,358건 / (접수 17,884,639건 + 미제사건 수 705,455건)
  · 2021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7,884,639건
  · 2021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7,916,358건
  · 2020.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705,455
- 2022년 실적 96.2% = 처리 16,048,851건 / (접수 16,021,970건 + 미제사건 수 661,373건)
  · 2022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021,970건
  · 2022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048,851건
  · 2021.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61,373건
- 2023년 실적 95.8% = 처리 16,313,857건 / (접수 16,399,212건 + 미제사건 수

637,148건)
· 2023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399,212건
· 2023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313,857건
· 2022.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37,148건
- 2024년 실적 95.8% = 처리 / (접수 16,767,349건 + 미제사건 수 657,713건)
· 2024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767,349건
· 2024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16,687,246건
· 2023.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57,713건
- 2025년 실적 = 처리 / (접수 + 미제사건 수 680,127건)
· 2025년 전체 접수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 2025년 전체 처리사건{소송사건(본안+본안외)+비송사건} 수
· 2024. 12. 31.기준 미제사건 수 680,127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통해 '이질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대법원 소관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다음, 대법원이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을 2개로 설정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가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지 않게 되어 프로그램 성과평가 및 환류가 미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목표달성 여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미흡 프로그램을 한 개 이상 선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우수·

미흡 프로그램을 토대로 성과 환류를 실시하되, 성과대상 프로그램 수가 3개 이하인 기관은 미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2개라는 이유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 성과 환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국회의 경우 의정활동(1000), 국회사무처(2000), 국회도서관(3000), 국회예산정책처(4000), 국회입법조사처(5000) 등 기관별로 5개의 성과대상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 자체평가위원회의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통한 성과 평가 및 환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도 현재 각급법원 단위의 예산(안) 작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각급법원 단위 예산 개편 검토 시 소속기관(정책연구원 등) 예산 체계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①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성과대상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점역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대법원은 점자법 제12조의2[20]에 따른 점자문서 제공 의무에 대응하고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대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등을 점자문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일반회계의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특별회계의 '등기업무운영지원'(7032-311), 점자판결문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사업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되어 제공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와 점자판결문 제공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20)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26년도 각종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사업명 (세부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가족관계등록사무)	-	4	4	-	-
등기특별회계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등기업무운영지원)	-	5	4	△1	△20.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민원서비스 개선)	2	10	10	-	-

○ 해당 사업들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이후의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역서비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건 수	제공 문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점역서비스	2024	4,000	-	-	-
	2025	4,000	-	-	-
	2026	4,000	-	-	-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2023	206,000	95.8	1건	점자 증명서
	2024	31,000	-	-	-
	2025	5,000	-	-	-
	2026	4,000	-	-	-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2022	20,000	183	2건	점자 판결문
	2023	20,000	3,584	5건	점자 판결문,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
	2024	10,000	159	4건	증인선서서, 판결문, 변호인의견서 점자문서
	2025	10,000	3,590[21]	2건	안내동영상 점자판결문, 소장 등
	2026	10,000	-	-	-

자료: 대법원

21) 집행액 중 3,190,000원은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안내 동영상(점자문서 제공에 대한 홍보)제작 비용으로 집행함.

○ 이와 같이 해당 사업들의 집행실적은 예산편성 이후 계속해서 저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및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예산은 최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계속해서 감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은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비율 자체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0%로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대법원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역서비스 관련 주요 홍보내역>

일 자	홍보 내역
2024. 7.~ 8.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시각장애인 구독 전자잡지 등에 점자판결문 제공 제도 포함 사법지원 제도 전반 홍보
2025. 10.	「장애인 사법지원」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전국 법원, 장애인 단체 및 법조 유관단체 배포

자료: 대법원

○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질적 이유는 해당 증명서들의 온라인 발급 비율이 더 높음[22]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점자문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가족관계 등록관서(동사무소 등)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이후 대법원은 협약기관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신청 관련 서류를 보내 점역을 요청한 후 그 결과물을 해당 시각장애인에게 송부하는 사업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임.

22) 2024년도 가족관계 증명서·등기부 등본 방문 및 인터넷 신청 건수

증명서구분	방 문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27,011,540	37,415,612
등기부등본	11,009,487	21,769,274

○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정부 부처 중 국세청은 2022년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자 파일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엔티스 전산 시스템 운영(7133-501)' 세부사업에서 국세청 행정시스템 기능개선을 한 바 있고, 법제처도 202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본문 및 첨부파일을 전자점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1억 7,800만원을 편성[23]하여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전자점자 출력 방식>

자료: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대해 대법원은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며 관련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23) 법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p.128.

있지만 대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해당 예산을 계속해서 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대법원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은 국세청과 법제처의 사례처럼 시각장애인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정보시스템과 등기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현재의 운영체계와 같이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건 별 점역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시각장애인이 직접 증명서를 점자문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24)]

나아가, 판결문의 경우 현재 당사자인 시각장애인이 담당 재판부 등에 구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점자판결문 등을 신청하면 이를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등으로 인해 판결문 점자파일을 사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직접 내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24) 가족관계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등록사항별증명서에 대해 보이스바코드를 통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보이스바코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각 정보시스템에서 점자문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만 된다면 시각 장애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점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각장애인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점자 판결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기능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일반회계

《세 입》

(1) 토지대여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토지대여료(51-511)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한 국가토지 임대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토지대여료 (51-511)	213	918	918	-	-

(나) 실제 수납액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토지대여료는 행정재산인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에 대한 수입 항목으로,

최근 5개년 토지대여료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21년 17.4%, 2022년 22.1%, 2023년 23.9%, 2025년 7월 기준 24%로 매우 저조함.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 이상이고, 2024년의 경우에는 다른 연도와는 달리 실제 징수결정액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편성하여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지대여료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 평균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2025년도의 경우 2023년 이전과 같이 9억원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2023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임.

<최근 5개년 토지대여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839	146	146	17.4	100	-	-
2022	908	202	201	22.1	99.2	2	-
2023	918	221	219	23.9	99.1	2	-
2024	201	214	213	106.0	99.5	2	-
2025.7.	918	220	220	24.0	100.0	-	-

자료: 대법원 제출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을 위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 검토, 재산가액 평가, 사용료

산정 등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됨. 이때 사용료 등의 징수요청을 하게 되고 사용인은 사용료를 수납일자에 선납의 형태로 납부하게 됨.

사용허가 대상인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재산의 임대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의 사용료 징수 결정액을 기준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이고,

수입 항목을 과도하게 계상할 경우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지출 항목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이 조치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실제 토지대여료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2026년도 세외수입 예산안 9억 1,800만원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본부 기본경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5억 7,900만원(1.9%)이 증액된 86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 (7011-250)	80,280	84,964	86,543	1,579	1.9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노력 필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공무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근 5개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2억 2,900만원, 2025년 4억 7,400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13억 7,400만원, 2025년 31억원으로 나타남.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합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 5,737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33억 2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5,907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25] 비목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개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고
	비공무원	공무원	계	
2021	229,438,710원	1,374,385,320원	1,603,824,030원	2020년도분
2022	155,993,460원	1,454,276,080원	1,610,269,540원	2021년도분
2023	264,634,000원	2,054,078,790원	2,318,712,790원	2022년도분
2024	384,721,590원	2,457,254,050원	2,841,975,640원	2023년도분
2025	474,412,500원	3,100,851,730원	3,575,264,230원	2024년도분
2026	357,372,640원	3,301,696,480원	3,659,069,120원	2025년도분 예상액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5)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예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최근 5개년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고용 현황>

연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21	–	57명	46명	80.7%
2022	–	62명	43명	69.4%
2023	–	63명	36명	57.1%
2024	1,812명	68명	36명	52.9%
2025. 9.	1,812명	68명	48명	70.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개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연도	소속 공무원 정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21	17,565명	598명	477(중증:51, 경증:375)명	79.8%
2022	17,674명	637명	474(중증:45, 경증:384)명	74.4%
2023	17,674명	637명	471(중증:46, 경증:379)명	73.9%
2024	17,702명	673명	472(중증:49, 경증:374)명	70.1%
2025. 9.	17,748명	675명	472(중증:58, 경증:357)명	70.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025년 9월말 기준 공무원 2.67%, 비공무원 2.65%)은 다른 중앙행정기관(2022년 공무원 3.66%, 비공무원 3.1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22.12.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 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합 계			31,455	8,936,761	278,823	3.12
정부 부문	공무원	소계	317	954,759	27,998	2.93
		중앙행정기관	53	202,342	7,402	3.66
		헌법기관	4	24,988	719	2.88
		지방자치단체	243	309,179	11,858	3.84
		교육청	17	418,250	8,019	1.92
	비공무원	소계	306	403,286	24,852	6.16
		중앙행정기관	42	72,905	2,281	3.13
		헌법기관	4	3,103	106	3.42
		지방자치단체	243	138,674	15,129	10.91
		교육청	17	188,604	7,336	3.89
공공기관		소계	790	594,568	22,835	3.84
		공기업	36	151,800	5,834	3.84
		준정부기관	94	130,714	5,785	4.43
		기타공공기관	208	176,586	6,183	3.5
		지방공기업	152	81,159	3,256	4.01
		출자 · 출연기관	300	54,309	1,777	3.27
민간기업		소계	30,042	6,984,148	203,138	2.91
		100인 미만	16,054	1,114,072	25,518	2.29
		100~299인	10,223	1,680,980	53,745	3.20
		300~499인	1,758	667,817	21,713	3.25
		500~999인	1,163	799,322	26,794	3.35
		1,000인 이상	844	2,721,957	75,368	2.77
		대기업집단	954	1,440,404	33,889	2.35

자료: 고용노동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2023. 5.

○ 특히,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 중앙관서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대신 30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매년 집행함에 따라, 당초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2024년도에는 본부 기본경비(7111-250) 사업[26]에서 15억 1,580만원,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13억 2,617만원 등 28억 4,197만원을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본부운영지원 사업에서 35억 7,781만원을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집행하였음.

그 중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공관관리', '기록보존소 및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 공공요금', '각급 법원 공공요금'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편성액의 10% 내외[27]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대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6) 각목명세서상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편성된 금액은 전부 '재외 주재관서 공공요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27) 2024년 편성액 161억 8,700만원 중 15억 1,580만원(9.4%), 2025년 편성액 208억 6,700만원 중 35억 7781만원(17.1%)

(3) 사법업무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사업은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법업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산장비 교체와 확충 등 사법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01억 600만원(13.9%) 증액된 828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사법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8,598	72,740	82,846	10,106	13.9

(나)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사업 중 일부 기능의 대국민 공개 필요

○ 대법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AI플랫폼을 개발하고자 '재판지원을 위한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이하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한다)을 2025년 예산으로 47억 6,000만원 편성하여 7월에 장기계속계약[28]을 체결하였고, 2026년 2차년도 사업 예산안 4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8) 계약기간 : 2025. 7. 18.~2029. 7. 1., 총 계약금액 144억 9,955만원(1차연도 38억 2,762만원)

<2026년도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4,706	4,239	△467	△11.0

○ 해당사업은 기존 사법업무전산화 시스템 내 지능형시스템 그룹을 AI와 연계 확대·개편하여 ① 법관의 재판준비·진행, 판결문작성 등 심리전체 과정에서 관련자료 분석 및 리서치 지원, ② 소장·공소장에 담긴 청구·공소내용, 행위시법 및 처벌규정, 부수처분 등 사건특성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한 심리계획 수립 지원, ③ 소송주체가 제출한 재판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건 기본요지 파악 및 쟁점사항 비교분석, ④ 재판자료 쟁점, 법률자료 검색결과 활용 판결문 목차 추천 및 초안 생성, ⑤ 소송·신청 접수서류 형식요건 점검과 보정명령서·보완요구서 생성 지원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LM[29]) 기반 생성형 AI 재판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법원내부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 4년간 시스템 구축에 161억 3,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임.

29)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이해와 생성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모델., 출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연도별 구축비>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소 계
개발비	1,155	1,467	3,548	33	6,203
장비도입비	3,270	2,560	2,255	960	9,045
감리비	281	212	313	85	891
운영 및 유지관리비	–	–	–	–	–
소 계	4,706	4,239	6,116	1,078	16,139

자료: 대법원

○ 그런데,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5, 2025. 7. 3. 발의)은 법원이 개발하고 있는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소송당사자들이 유사 사건의 재판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법원이 해당 AI 재판지원 플랫폼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모든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재판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건 기본요지 및 쟁점사항 파악, 소송·신청 접수서류 형식요건 점검 등의 기능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나홀로 소송 증가와

함께 챗GPT등 생성형 AI를 통한 법률 문서 양식 수정, 법적 쟁점 검토 등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새롭게 활용[30]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와 맞물려 국민들의 소송 준비 및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미선임 건 수>

연도	전체 사건 수 (합의부·단독·소액 포함)	변호사 미선임 사건 수	미선임 비율(%)
2020	912,971	650,408	71.2
2021	857,046	588,804	68.7
2022	767,899	523,209	68.1
2023	768,886	522,631	68.0
2024	786.085	529,276	67.3

자료: 대법원

또한, 싱가포르 사법부에서는 소액재판소에 나홀로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등에서 법적·사실적 쟁점을 추출해 이들이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AI 서비스를 올해 11월 도입할 예정[31]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반국민의 소송지원을 위한 AI서비스 도입을 시도하는 방향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0) 최은솔, '민사 10건 중 7건 '나홀로 소송'..."비용 절감" vs "재판 지연 우려"', 파이낸셜 뉴스. 2025. 3. 11.(https://news.nate.com/view/20250311n23124)
31) 박성동, "AI로 소장 쓰고 변호사비 줄인다", 법률신문, 2025. 10.(https://www.lawtimes.co.kr/news/212408)

○ 대법원에 따르면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법원 내부의 법관 및 직원이 재판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 업무지원용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예산 편성이 확정되었으며, 10% 이상 과업변경시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기존 과업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5년 7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1차 연도에 해당하는 과업의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과업 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내용 중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할 경우, 별도의 재판 관련 대국민 AI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2026년도 2차연도 사업 진행에 우선하여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과업을 조정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을 구현하는 방안과,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제성, 효율성, 조기 구현 가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일반국민들의 소송 수행 지원 등을 위한 AI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대법원은 형사재판 및 양형 관련 조사·분석에 다양한 AI기반의 기능을 반영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형사법관에게 최적의 양형정보를 제공하고자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 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이하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한다)을 신규로 실시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으로 6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	6,578	6,578	-

○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0억 3,800만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형기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양형정보 추출·추천 서비스, 지능형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검토 지원이 가능한 AI 모델 개발과 함께 필요한 정보자원(서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연도별 구축비>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소 계
개발비	2,380	460	742	3582
상용SW도입비	–	495	557	1,052
HW도입비	2,015	408	125	2,548
데이터구축비	1,784	439	400	2,623
감리비	399	135	148	682
운영 및 유지관리비	–	–	546	546
소 계	6,578	1,937	2,518	11,033

자료: 대법원

○ 대법원은 2026년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통상 정보화사업 심의에 요구되는 법정 절차[32]를

32) 사업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예산 확정에 따른 과업 조정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정보화사업심의회 심의 → 상용SW 구매계획 적정성 사전 검토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 심의 → 내부 검토 → 조달청 사전규격공개 → 사업설명회 개최 → 조달청 본 공고 → 조달청 제안평가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거쳐 4월 말까지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발주한 대법원의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잦은 유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1차년도 예산 상당 부분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바 있음.

<대법원이 발주한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차년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사업추진 내역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20년)	13,130	8,935	3,882	2020. 1. 입찰 공고 2020. 3. 입찰 공고 취소 2020.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2020. 4. 재입찰 공고 **2020. 7. 계약 체결**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2020년)	7,247	2,827	4,313	2020. 5. 사업자 선정 의뢰 2020. 6. 입찰 공고(단일응찰로 유찰) 2020. 9. 재입찰 공고 **2020. 9. 계약 체결**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2023년)	3,829	1,387	2,389	2023. 3. 입찰 공고(무응찰 유찰) 2023. 5. 재입찰 공고(단일 응찰) 2023. 5. 단일 응찰에 따른 적격성 평가 2023. 6. ~ 7. 사업자 계약 여부 미결정 **2023. 7. 계약 체결**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2025년)	8,565	-	7,260 이월 예정	2025. 7. 입찰 공고(단일응찰로 유찰) 2025. 8. 단일응찰에 따른 적격성 평가 **2025. 9. 계약 체결**

자료: 대법원

○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도 대법원이 예상하는 날짜에 입찰 공고를 하더라도 유찰될 경우 대법원의 계획보다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음.

계약상대방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간과 2024년 이후 다년도 사업으로 실시된 대법원의 정보화사업 선금 집행 비율(30%~70%)을 감안하면,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65억 7,800만원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3]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2024년~2025년 대법원의 다년도 정보화 사업 선금 집행 비율>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집행일	선급지급 비율(%)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2025. 9.~ 2027. 9.	5,261	2025. 11.	29%
2025년 법원도서관 미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활용성강화	2025. 10.~ 2026. 10.	2,740	2025. 10.	30%
AI 재판지원 플랫폼 구축	2025. 7. ~ 2029. 3.	1년차: 3,828	1년차: 2025. 10.	1년차: 일반연구비의 50%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2024. 12.~ 2025. 6.	145	2025. 2.	50%

자료: 대법원

○ 따라서, 대법원은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26년

3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즉시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해 2026년 발주계획에 따른 입찰공고 일정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연내 예산의 전액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네트워크 공사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은 정보보호 컨설팅,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확충, 망분리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사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화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내역사업 중 각급 법원의 인사이동 및 법원 사무실 환경개선 등에 따른 네트워크 등 시설 공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으로 시설장비유지비 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내역사업 중 시설장비유지비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13,387	17,768	21,374	3,606	20.2
시설장비유지비	297	395	395	-	-

○ 최근 5년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4년까지 계속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2024년까지 전자소송 세부사업(1331-302)[34]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이 사법업무전산화로 통합되어 3억 9,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그런데, 사법업무전산화 세부사업과 전자소송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장비유지비는 다음과 같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차년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1	355	395	-	325	70	82.3
2022	355	395	21	282	92	71.3
2023	355	417	5	345	66	82.7
2024	355	400	-	336	64	84.0
2025. 7.	395	395	-	250	-	63.3

자료: 대법원

○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매년 초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각급 법원의 수요를 조사해 해당연도 예산을 각급법원에 교부하고 있다고 함.

<각급 법원 네트워크 공사 수요파악 서식>

내역	법원	호수(층)	실과명	사용자	직급	용도	아울렛	라인 코드	공사 요청일 (월/일)	공사 시점 (주/야)	특이 사항

자료: 대법원

34) 2025년 예산부터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전자소송 세부사업의 모든 내역사업이 사법업무전산화 세부사업에 편입되었음.

그러나, 매년 각급법원의 수요만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용액이 매년 6,0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액 3억 9,500만원이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요구되어 편성되고 있는 측면 때문으로 보여짐.

○ 다만, 2026년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에 따라 법관 80명을 포함한 법원공무원 등 345명이 증원[35]될 예정으로 예년 대비 네트워크 등 시설 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예산 집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확한 수요에 부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5) 법관 80명, 재판연구원 94명, 일반직 등 직원 171명

(4) 가족등록업무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사업은 국민의 가족정보를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가족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억 3,500만원(0.8%) 감액된 17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332-303)	17,613	17,456	17,321	△135	△0.8

(나) 과다 편성된 임차료 감액 필요

○ 대법원은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 등의 장비를 임차료로 편성하여 금융리스의 방법을 통해 집행[36]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구매 대신 필요 기간 동안만 최신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초기투자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유지보수 부담을 줄이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임.

36)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임차료는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로 집행할 수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68.

○ 2026년 동 세부사업의 임차료는 전년대비 3억 300만원이 감액된 24억 9,4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세부 편성 내역과 최근 5년간 임차료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 임차료 예산안 산출근거>

▣ 산출근거

① 2021년 장비도입분(6년차): 443백만원(221,302,375원 × 2회 = 442,604,750원)

② 2022년 장비도입분(5년차): 185백만원(46,343,202원 × 4회 = 185,372,808원)

③ 2023년 장비도입분(4년차): 18백만원(4,549.065원 × 4회 = 18,196,260원)

④ 2024년 장비도입분(3년차): 1,847백만원

- 노후장비 : 418,500,000원 × 4회 = 1,674,000,000원,
- 후견등기정보시스템 고도화 장비: 16,750,000원 × 4회 = 67,000,000원
- 이미지제적부 인터넷 발급 장비 도입분: 26,500,000원 × 4회 = 106,000,000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2021년 도입분	540	1,080	1,080	1,080	885	443
2022년 도입분	192	383	383	185	185	93
2023년 도입분	12	23	18	18	18	9
2024년 도입분	556	1,882	1,847	1,847	1,847	1,357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Ⅱ-1

<최근 5년간 임차료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이·전용 등	차년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
2021	4,499	4,499	-	-	3,915	584	87.0
2022	4,506	4,506	-	-	3,804	702	84.4
2023	4,065	3,903	△162	-	3,371	532	86.4
2024	2,797	2,328	△469	-	2,210	118	94.9
2025. 7.	2,797	2,797	-	-	1,339	118	47.8

자료: 대법원

○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차료 불용액은 주로 전산장비 임차료 불용액에 기인[37]한 것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전산장비 임차료가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이유는 리스료에 대한 예산안 요구·편성 이후 리스계약 체결과 리스료 납부가 이루어져 정확한 리스료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금융리스의 경우 물품 인도 완료 후 리스가 개시되고 실제 리스료를 납입하게 되는 리스실행일에 리스료가 확정되어 리스회사가 제출한 원리금상환표에 따른 금액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리스회사에 지불하게 되며,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리스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38]

---

37) 2022년까지는 외부 임차 건물에서 가족관계등록 자료정비사업소를 운영하였고, 해당 임차료 불용액이 2021년 2,200만원, 2022년 1,900만원이 발생하였음(2023년부터 구 과천등기소로 이전하여 건물 임차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음.)

38)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조달청 지침 제1129호)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체결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행위(이하 "리스"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3. "리스회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설대여 회사를 말한다.
6. "리스기간"이란 수요기관이 물품수령증서(이하 "수령증"이라 한다)를 발급한 날로부터 리스계약의 종료일 까지를 말한다.
7. "리스실행일"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인도, 인수) ①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

결국 최초 계약에 의한 리스료는 예산 편성 1년차~2년차에, 금리 재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리스료는 예산 편성 4년차~5년차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39]해져서 해당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 대법원은 2025년과 2026년 신규 장비 임차가 없어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가 제출한 원리금 상환표상 2026년 집행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2024년 장비 도입분(예산 편성 3년차), 2022년 장비 도입분(예산 편성 5년차), 2021년 장비 도입분(예산편성 6년차)의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 현재의 원리금상환표상 2026년 실제 집행해야 할 금액인 22억 3,046만원 보다 2억 6,270만원 더 많은 24억 9,31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④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리스료) ① 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 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 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 (삭제)

⑤ 리스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9) 1회차 리스실행일과 조정 이후 리스실행일이 해당연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전일 경우, 심의과정에서 해당 리스료에 맞춰 예산을 조정할 수 있고, 1회차 리스실행일과 조정 이후 리스실행일이 해당연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 이후일 경우 차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수 있음.

<2026년 예산안의 임차료 예산 편성 단가 및 실제 상환예정액>

(단위: 원)

연도	예산안 편성 단가(A)	원리금상환표 금액(B)	차액(A-B)
2021년 장비도입분(6년차)	442,604,750	447,976,190	△5,371,440
2022년 장비도입분(5년차)	185,372,808	179,973,600	5,399,208
2023년 장비도입분(4년차)	18,196,260	18,196,260	-
2024년 장비도입분(3년차)	1,847,000,000	1,584,318,960	262,681,040
소 계	2,493,173,818	2,230,465,010	262,708,808

자료: 대법원

○ 비록, 대법원의 임차료 중 2023년 12월 28일에 리스를 실행한 2023년 장비도입분(예산편성 4년차)리스료 재산정이 2026년 12월 28일에 있어 집행예상액의 변동이 발생[40]할 수 있지만, 해당 리스료 지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대비 2025년 11월 기준금리가 2.5%로 낮아진 점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동결되고 있는 추세[41]를 감안한다면, 2023년 장비도입분(예산편성 4년차)의 실제 상환예정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법원의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장비들의 임차료 예산 중 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되지 않아 2026년 실제 집행해야 할 금액 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 약 2억 6,000만원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0) 이 외에는 2026년 리스료 집행액 변경은 없는 상황임.
41)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참조(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

(5)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사업은 법원의 재판업무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판례,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DB를 구축하고 디지털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4억 9,500만원(23.2%) 증액된 7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2,252	6,453	7,948	1,495	23.2

(나) 법원 판례 검색 등 정보제공 플랫폼의 통합 방안 마련 필요

○ 법원도서관은 법원 내부에서 생성되는 판례 및 문헌 등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로 법원도서관 법률데이터의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 및 연계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수립에 대한 BPR/ISP를 거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2억 6,800만원 규모로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으로 5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차(2025년)	2차(2026년)	3차(2027년)	4차(2028년)	5차(2029년)
① 법원도서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② 데이터 연계 활용성 강화 ③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법원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필수 솔루션 구입 ③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HW, SW 구입	① 법원전자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 ② 지능형 검색 시스템 도입 ③ 지능형 검색 SW 구입	① 지능형 판례 서비스 구축 ② 맞춤형 재판 지원 개선 ③ 법원도서관 통합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① 주문형 도서 발간 서비스 구축 ② 사법지식정보 공개형 학습 데이터 구축 ③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3,701	5,050	3,178	3,414	1,837

자료: 대법원

○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민간법률정보 플랫폼이 이용료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방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경쟁력 있는 법률 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법원의 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인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이 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 수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결과를 받는 등의 상황을 해소하고,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판례 등 법률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평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법률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임.

<2024년도 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수 성과지표 현황>

▣ 성과지표명 : 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수(정보화)

- 법원의 주요한 법률 정보인 판례와 문헌 DB를 이용하는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의 접속 건수를 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수의 성과지표로 설정함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가중치	'20	'21	'22	'23	'24
ㅇ디지털 콘텐츠 활용 건수(정보화)(백만건)						
■목표		21.9	23.4	24.5	25.8	28.3
■실적	0.7	23.2	24.2	26.3	27.9	18.5 ✓

자료: 대법원

○ 현재 법원의 판례와 문헌 DB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사법정보공개포털 내의 종합법률정보 외에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법고을이 있는 상황인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플랫폼을 병렬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유지보수비의 중복적 발생 등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법률정보가 다수 플랫폼에 분산되어 일반 국민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법고을은 크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법원의 판례 등 제공 플랫폼 현황>

구분	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법고을[42]	
운영 주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법률정보 DB 구축[43]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2026년도 예산안 (운영 비용)	31,843만원 사법업무전산화 ㄴ사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ㄴ사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ㄴ종합법률정보 유지관리비		4,419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ㄴ위탁사업비 ㄴ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SW유지관리		4,223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ㄴ위탁사업비 ㄴ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SW유지관리	
검색 자료	판례 법령 조약 문헌(원문보기 불가능) 규칙/예규/선례		판례/해외판례 소장자료(도서관 외부에서 원문보기 불가능) 법원간행물		판례/해외판례 법령 문헌(원문보기 가능[44]) 규칙/예규/선례	
홈페이지 접속자수 (명)	2023년	38,597,452	2023년	642,418	2024. 9. 24. 서비스 시작	
	2024년	23,607,308	2024년	608,342	2024년	63,805
	2025년7월	6,179,271	2025년7월	341,347	2025년7월	232,623

자료 : 대법원

○ 대법원의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분산 구축으로 발생하는 문제[45]를 해결하고 정보시스

42) 법고을은 정보 통신환경 등의 제약으로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법조인, 법학자 및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경 법원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04년 법고을LX는 판례, 법률문헌, 법률, 규칙, 예규 등을 탑재한 DVD로 제작되었고, 2015년에는 저장매체를 USB로 변경하였음. 2022년 법고을을 온라인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4. 9.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5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3) 법원도서관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탑재하는 법률DB를 구축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261백만원임.

44) 저작권 동의자(저작권 회원) 상호간 문헌의 원문(119,011건)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25. 6. 이후부터는 일반회원에게도 여러 문헌 중 사법(747건), 사법논집(842건), 대법원판례해설(5,509건)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음.

45) 자료유형 및 서비스대상의 확대로 인해 자료의 수집, 등록 열람 등의 기능이 시스템별로 분산 구축

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만, 종합법률 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및 고도화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 담당하고 있어 법원도서관 단독으로는 플랫폼 기능 개선 등을 주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민간 법률정보 플랫폼의 이용요금[46]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국민의 공평한 법률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 정보 제공 사이트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민간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바, 법원행정처와 법원도서관의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협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판례 제공 플랫폼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플랫폼 통합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대법원은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과업에 대한 면밀한 재설계를 통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대법원의 통합적인 판례 등 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되어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고, 시스템 분산 구축으로 인한 관리 대상 및 시스템 간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6) 엘박스는 2024년 7월 이용요금을 기존 월 29,900원에서 월 69,900원으로 약 233% 인상하고, 무료 이용자에게 하루 3건의 판례를 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던 서비스를 종료함.

(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억 4,500만원(2.7%) 감액된 12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학위과정 위탁교육,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억 3,800만원(13.4%) 감액된 1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10,355	12,684	12,339	△345	△2.7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1,552	1,778	1,540	△238	△13.4

(나) 법정언행컨설팅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단년도 방식에서 다년간 평가·환류 방식으로 개편 통해 실질적인 법정언행 개선 필요

○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은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내역사업에 포함된 내내역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으로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25년까지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2026년도에는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었음.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은 2013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법정언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 의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처음 시행하였음.

2015년부터 초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를 앞두고 있는 법관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16년부터는 실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컨설팅을 받지 못했던 법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선정된 대상자 이외의 법관에 대해서도 일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런데, 2013년부터 꾸준히 시행되는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컨설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47],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단년도 사업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법관들의 법정언행 평가 및 환류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법정언행컨설팅은 단년도 사업방식으로 매년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매년 2월과 3월 대상자 파악이 이뤄지고, 4월과 5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며, 6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하반기 동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법정언행컨설팅 집행 일정>

2월
–법정언행 컨설팅 대상자 파악요청 공문 실시
3월
–법정언행 컨설팅 희망 법관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법정언행 컨설팅 제외 희망 법관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예시) **2025년 법정언행컨설팅 대상자**
○ 일률적 실시 대상 법관 – 사법연수원 39기, 40기 법관 중 단독사건의 재판장/사법연수원 38기, 39기 부장판사 중 재판장(이전 년도 제외자)/컨설팅을 실시하는 해에 비재판보직(재판연구관, 심의관 등)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법관
○ 제외 사유 – 배석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재판장이 아니어서 법정진행에 대한 방청이 불가능한 법관/소년, 영장사건 등 비공개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단, 가사비송사건 담당 법관은 법정언행컨설팅 대상에 포함)/법정언행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법관/2025. 5. 이후 휴직 예정인 법관
○ 컨설팅 희망 법관 – 사법연수원 37기 이상 법관 중 컨설팅 희망 법관(단, 법정언행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법관 제외, 희망자가 실시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수가 높은 순서부터 대상자 선정)

4월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대상자 재판 동영상 촬영 협조 요청 공문 실시
–사업자 선정 절차 준비 ⇨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입찰공고 의뢰 준비

47) 전문기관 선정의 법령상 근거 없이 매년 동일한 업체와 입찰공고를 통한 계약을 맺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경쟁, 수의계약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 실시 6월 -사업자 제안평가회 개최 및 용역 계약 체결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에 대한 사법연수원 교육 실시 7월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일정 등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 동영상 송부 등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실시 8월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 대상 법관 법정 방청 및 1차 컨설팅 실시(~ 9월) 9월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재판동영상 2차 촬영 협조 요청 공문 실시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관련 장소 등 협조 요청 공문 실시(서울고등법원) 10월 -사업자 소속 컨설턴트 대상 법관 2차 컨설팅 실시(~ 11월) -대상 법관 직무스트레스 검사 실시 11월 -대상 법관 2차 컨설팅 계속 실시 12월 -사업자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 -법정언행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내부 결재 공문 실시 -법정언행 컨설팅 예산 집행 요청 공문 실시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법정언행컨설팅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은 매년 상반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법관에 대한 법정언행 컨설팅이 이뤄지지 않고, 하반기에 1-2차례의 컨설팅 및 보고서 작성이 매년 반복적·분절적으로 이뤄져 법정언행 컨설팅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48].

실제 최근 4년간 동 내내역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컨설팅 기관

48)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메가넥스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아그막이, 2024년부터 2025년도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기관으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음.

선정절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매년 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여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2021～2024년 법정언행컨설팅 내내역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
2021	143	69	212	141	70	1	66.5
2022	123	70	193	133	60	–	68.9
2023	173	60	233	144	84	5	61.8
2024	173	84	257	170	87	–	66.1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이 2023년부터 사법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연수원으로 이관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계약업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하면서 일부 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대법원은 상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언행컨설팅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사법연수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컨설팅 기관 선정 절차로 인해 컨설팅을 실시할 수 없었던 상반기에도 법정언행 컨설팅이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단년도

방식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종료되는 방식'에서, '임용 후 5년, 10년 단위로 개별 법관의 법정언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여 법정언행이 실제 개선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정언행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재판절차비용지원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사업은 재판 일반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지원을 통해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47억 9,700만원(12.5%) 감액된 33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및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기 위한 진술조력인[49]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수용비(210-01) 목으로 구성됨.

<2026년도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41,775	38,300	33,503	△4,797	△12.5
진술조력인 제도	9	20	20	-	-

49) 진술조력인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나) 진술조력인의 상근/비상근 이원적 운용 고려해 감액 필요

○ 진술조력인의 양성·배치 등 기본 운영과 보수·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등의 규정이 적용됨.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수당 및 활동)[50]는 상근 진술조력인과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이원적 방식의 운용이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상근 진술조력인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월별 보수를 지급받으며,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수당 신청서 제출 없이 활동보고서만을 제출하는데 반해,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한정된 시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하면서, 그 대가로 사유 발생 시마다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음.

50)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진술조력인의 보수·수당 및 활동)** ①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진술조력 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51].

○ 그런데, 2026년도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2,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상근과 비상근 구별 없이 진술조력인 선정 예상 사건 수에 진술조력인 예상 선정율을 곱한 후 1회당 단가를 곱한 액수로 계상된 금액이 진술조력인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진술조력인 제도 내역사업 산출 근거>

ㅇ 진술조력인 수당 : 20 → 20백만원 (전년 동)
- 2,032건(2025년 진술조력인 선정 예상 사건수) × 3%(진술조력인 예상 선정율) × 30만원(단가) × 1회
  * 2025년 예상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사건수(1심) : 2,032건(항소심 사건수는 제외함)
  * 1,682건(2023년 사건수) × 1.099 × 1.099 = 2,032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진행 건수	967	1,093	1,103	1,154	1,155	1,404	1,688	1,682	9.9%

  * 사건당 진술조력인 참여횟수 : 최소 1회(증인신문기일)
  * 2023. 12. 대법관회의에서 성폭력범죄 등 사건 진술조력인 2024년 수당을 매건 각 금 30만원으로 의결

자료 :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51)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① 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
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진술조력인 수당은 상기한 법령에 따라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상근 진술조력인의 참여 횟수까지 함께 산정되어 편성된 2,000만원의 금액은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은 법무부 소관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세부사업에 이미 계획[52]되어 있는데, 대법원 소관 동 내역사업에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참여 횟수까지 합산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상근 진술조력인 관련 예산은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 간 동 내역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였고, 이에 동 내역사업의 예산도 감액편성 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진술조력인 제도 내역사업 집행 내역[53]>

(단위 : 백만원, 건)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원건수		기준 금액 (건당)	불용액
			사건수	소송관계인수		
2021년	50	2	18	19	30만 원	48
2022년	50	5	23	24	30만 원	45
2023년	30	7	64	71	30만 원	22
2024년	30	9	73	78	30만 원	21
2025. 9말.	20	6	18	18	30만 원	

자료 : 대법원 제출 바탕으로 재작성

52) 2026년도에는 7억 9,400만원이 계획됨.
53) 모두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음.

이에 더해, 2025년 6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재판부에 상근 진술조력인 위주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위해 편성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진술조력인 선정 관련 협조 요청사항」 공문>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1. 사법부 발전을 위해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에 힘쓰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3. 12. 19.부터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23. 10. 12.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진술조력인 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풍부하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4.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참조).

5. 또한 **진술조력인 선정 시 "상근" 진술조력인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진술조력인 선정 관련 협조 요청사항(법무부) 참조).

6. 진술조력인 명부에는 진술조력인 개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술조력인 제도 안내 1부.
2. 진술조력인 선정 관련 협조 요청사항(법무부) 1부.
3. 2025년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명단(법무부) 1부. 끝.

자료 :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도 과거 실집행된 예산의 범위 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함.

○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및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인정되나, 타 사업 예산과 중복적으로 편성되어 동 내역사업의 예산이 과다 계상됨에 따라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 사업의 예산을 일부 삭감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활용 건수를 제고시키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되,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2,000만원의 예산 중 최근 5년간 실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1,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음.

(8) 전문재판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은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심급구조 정상화 및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29억원(997.4%) 증액된 25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은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및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11억 9,600만원(1,764.9%) 증액된 22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문재판운영 (1144-407)	3,249	2,296	25,196	22,900	997.4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1,201	1,201	22,397	21,196	1,764.9

(나)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 법원시설공사 위한 예산을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세부사업으로 이관 및 자산취득비 감액 등 필요

○ 대법원은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법원이 민간시설과 같은 건물 및 층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이므로 보안 및 방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에는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내역사업을 통해 **제3, 4별관**만 공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의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협소도 및 제3, 4별관의 노후도 심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1331-618)'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제2청사 신축사업은 당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455억 5,8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공사부지의 토지 오염문제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토양정밀조사, 지하안전평가, 위해성 평가 등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일련의 평가로 인해 총사업비가 1,476억

8,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완료연도도 2026년에서 2032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보임. 사업 7년차인 2026년에도 기본설계비 등을 위한 금액이 국유재산기금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된 상황임.

또한 2025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5년간 판사가 370명 증원될 예정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만 52명의 법관이 증원될 예정이어서 법원 내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고 (구)서울회생법원 제3, 4별관의 공간을 재배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일부 조직을 이전하는 등의 예산안을 2026년도에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내역사업으로 편성함.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1억 9,600만원 증액된 22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①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신규) 175억 6,900만원, ②(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신규) 32억 3,900만원, ③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신규) 3억 8,800만원 등 3개의 내내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④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 운영비 내내역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회생법원 역량 및 운영강화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1,201	1,201	22,397	21,196	1,764.9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	-	17,569	17,569	순증
서울회생법원 이전	-	-	16,926	16,926	순증
광주회생법원 설치	-	-	643	643	순증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	-	3,239	3,239	순증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	-	388	388	순증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1,201	1,201	1,201	-	-

○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은 2025년도 동 세부사업에 존재하지 않았던 2026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5년까지는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내역사업으로 12억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동 내역사업이 '회생법원 운영 및 역량강화' 내역사업 아래의 내내역사업으로 포함되면서,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및 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사업과 같은 내역사업에 편성되었음.

○ 그러나,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 ①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②(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및 ③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동 세부사업이 아닌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인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으로 이관하는 것이

대법원 예산과목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법원시설관리 등 세부사업은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해 법원활동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 별관 증축에 따른 기존 청사 시설구조 재배치 등을 위한 것으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및 재판지원시설 확충 및 구조 개선', '제주지법 공간재배치' 등의 내내역사업 예산이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특히,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서울법원종합청사)[54]' 내내역사업은 종합청사 사무실의 협소도 심화, 여유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分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이 토양정화작업 등으로 예정 준공시기가 2031년 12월로 예상됨에 따라 공간확충이 필요하여 진행되는 사업임.

①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및 ②(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사업 모두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 내내역사업과 같은 취지의 사업이고, ③통합도산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법정 및 재판지원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 내내역사업과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이관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위 사업들을 '법원

54) 2025년도 예산 38억 3,400만원, 2026년도 예산안 15억원(△23억 3,400만원)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1200)' 프로그램으로 이관하고 동 프로그램이 성과평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전환[55]될 경우, 사업의 성격에 맞는 성과지표[56]를 통해 성과측정 및 환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전문재판운영(1144-407) 세부사업은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을 통하여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를 위한 예산만 편성되어 온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서울회생법원이 캠코양재타워에 임대할 공간을 살펴보면 1층, 2층, 4층, 5층 및 12층부터 16층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타워 각 층에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1층 및 2층의 경우 민간시설과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임.

55)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관리 대상 사업 재구조화 및 프로그램 세분화 필요' 검토보고 참조.
56) 현재 속한 재판활동지원(1100)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전체 사건처리율'임.

<캠코양재타워 내 서울회생법원 임대계획>

□ : 회생법원 임대공간

<table>
<tr><th>층</th><th colspan="6">이용구분</th><th>전용면적(평)</th></tr>
<tr><td>20F</td><td colspan="3">캠코</td><td colspan="3">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td><td></td></tr>
<tr><td>19F</td><td colspan="6">캠코</td><td></td></tr>
<tr><td>18F</td><td colspan="6">캠코</td><td></td></tr>
<tr><td>17F</td><td colspan="6">임원실</td><td></td></tr>
<tr><td>16F</td><td colspan="6">캠코</td><td>243.92</td></tr>
<tr><td>15F</td><td colspan="6">캠코</td><td>263.83</td></tr>
<tr><td>14F</td><td colspan="2">캠코</td><td colspan="2">엘지씨앤에스</td><td colspan="2">캠코</td><td>243.92</td></tr>
<tr><td>13F</td><td colspan="6">교보생명보험</td><td>263.83</td></tr>
<tr><td>12F</td><td colspan="4">에스케이텔레콤</td><td colspan="2">캠코</td><td>243.92</td></tr>
<tr><td>11F</td><td colspan="3">한국구보다</td><td colspan="3">입센코리아</td><td></td></tr>
<tr><td>10F</td><td colspan="3">캠코</td><td colspan="3">법무법인바를정</td><td></td></tr>
<tr><td>9F</td><td colspan="3">한국전력</td><td colspan="3">서울보증보험</td><td></td></tr>
<tr><td>8F</td><td colspan="6">한국전</td><td></td></tr>
<tr><td>7F</td><td colspan="3">한국전력</td><td colspan="3">현대자동차</td><td></td></tr>
<tr><td>6F</td><td colspan="3">페이퍼코리아</td><td colspan="3">캠코</td><td></td></tr>
<tr><td>5F</td><td colspan="6">캠코</td><td>263.83</td></tr>
<tr><td>4F</td><td colspan="4">캠코(전용 224.27평)</td><td colspan="2">통신실(전용 19.65평)</td><td>243.92</td></tr>
<tr><td>3F</td><td colspan="3">캠코전산센터(전용 118.92평)</td><td colspan="3">체력단련실(전용 139.18평)</td><td></td></tr>
<tr><td>2F</td><td colspan="3">한국전력</td><td colspan="3">국민은행(~’27.12월)</td><td>154.91</td></tr>
<tr><td>1F</td><td colspan="3">한국전력</td><td colspan="3">국민은행(~’27.12월)</td><td>170.47</td></tr>
<tr><td>B1</td><td colspan="2">브라이드밸리</td><td colspan="2">블루밍가든</td><td colspan="2">커피카소</td><td>창고</td><td></td></tr>
<tr><td>B2</td><td>구내식당</td><td colspan="2">창고</td><td>미화 휴게실</td><td>관리 사무소</td><td>관리사무소 창고</td><td>가우디 코리아</td><td></td></tr>
<tr><td>B3</td><td colspan="6">가우디코리아</td><td></td></tr>
<tr><td>B4~7</td><td colspan="6">파킹투윈
총365대(지상 66, 지하231, 기계식 68)</td><td></td></tr>
<tr><td colspan="7">합계</td><td>2,092.55평</td></tr>
</table>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법원이 민간시설과 같은 건물 및 층을 공유하는 사례는 이번 서울회생법원이 첫 사례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이전 배치 기본계획, 리모델링 설계 발주 준비 및 과업지시서·지침 작성 과정에서 명시적인 보안 및 방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서울회생법원 캠코양재타워 이전 계획>

진행 내용	일정 계획	소요월수	금액(백만원)
청사 이전 배치 기본계획 수립	2025년 3월 ~ 4월	2개월	–
예산 배정 관련 기재부 · 예산실 협의	2025년 5월 ~ 12월 초 (정부안 국회 통과 시점까지)	7개월	–
리모델링 설계 발주 준비	2025년 6월 중순 ~ 12월	6.5개월	–
설계 과업지시서 및 지침 작성	2025년 5월 ~ 12월 초 (정부안 국회 통과 시점까지)	7개월	–
청사이전 TFT 공식 출범	2025년 9월 ~ 12월	4개월	–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2025년 9월	1개월	현재진행단계
청사이전위원회 구성	2025년 12월 ~ 청사이전	12개월	
설계공모 착수	2026년 1월 ~ 2월 (공공건축 설계발주가이드 제안 설계공모 기준/최소 57일 이상 준용)	2개월	225
실제 배치 설계 진행 (도면, 내역서, 시방서 작성)	2026년 3월 ~ 5월 (1개월 여유기간 포함 ☞ 변경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	최대 3개월	–
조달청 입찰 및 시공사 선정 계약 감리자 선정	2026년 6월	1개월	55
실제 배치 공사 진행 (임차실 이전 순차적 공사 진행 필요)	2026년 7월 ~ 10월 (주말 공사 진행시 공사기간 변경가능)	최대 3개월	공사비 5,645
준공 및 이전	2026년 10월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유동적)	1개월	자산취득비 :1,627 이전비 :100 임차료 :1,222 관리비 :1,167 입주보증금 :6,872
누적 예상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11월	총 21개월	소 계 : 16,926

자료 : 대법원 제출

이에 대해 대법원은 리모델링 설계 발주 및 과업지시서·지침에 보안 및 방호계획을 추가하고 특약사항 등을 추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대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을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방호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차질 없이 캠코양재타워에 서울회생법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성된 「서울회생법원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방안 검토」(이하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면,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은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음[57].

대법원은 당초 2026년도 예산을 통하여 제3, 4별관뿐만 아니라 '본관'까지 공간재배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본관'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본관 및 제3, 4별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공사비(420-03)는 당초 기본계획서상 기재되어 있는 35억 2,200만원에서 13억 5,400만원이 감액된 21억 6,800만원이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57) 동 계획서는 2025. 10. 말 기준 가장 최신의 공간활용방안 검토 계획서임.

<기본계획서와 (구)서울회생법원 공간재배치 사업 산출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비목	기본계획서(A)	2026년도 예산안(B)	차이(B-A)
공사비(420-03)	3,522	2,168	△1,354
자산취득비(430-01)	840	828	△1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제3, 4별관 및 본관까지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취득비(430-01)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6년도 동 사업을 통하여 제3, 4별관만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는 별다른 감액 없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감액 정도에 비례하게 감액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사업은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법원활동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 보안 검색장비 등을 구비하여 청사 내 근무하는 법원구성원 및 출입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66억 7,500만원(10.4%) 증액된 708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46,668	64,162	70,837	6,675	10.4

(나)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대법원은 2025년 1월 시위대가 청사에 난입하여 중상자 11명을 포함한 약 12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서부지법 사태[58]에서 외부에 노출된 유리출입문 및 창문이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는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58) 이수연,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에 12억, 예상의 2배”, 동아일보, 2025. 10.,(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930/132499694/2)

유리문 및 창문에 강화필름을 부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유리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59]를 예방하고 법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사안전관리 내역사업에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예산 23억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내역사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사안전관리	5,741	4,832	2,575	△2,257	△46.7
각급 법원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사업	-	-	2,339	2,339	-

○ 대법원은 법원 청사의 유리문 및 창문에 적용할 강화필름 기준규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60]과, 부착 대상인 각급법원 청사 1층 유리 출입문 및 민원업무부서(종합민원실, 민사집행과, 민사신청과, 등기과 등)의 유리창 및 종합상황실 유리창의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의 2026년 소요예산을 각급 법원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고, 향후 3년간 대상 법원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59)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 서부지법 사건 이외 법원 청사 1층 유리 출입문 또는 유리창문이 시위대 등에 의해 고의로 파괴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함.
60) 김경문 등, 「법원청사 유리창 및 유리문 강화필름 부착 용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5. 7.

<2026년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사업 산출 내역서>

(단위: 원)

법원명	출입문수(개)	소계(㎡)	창문 수(개)	소계(㎡)	합계(㎡)	금액(원)
대법원	10	298	77	1,036	1,334	256,548,210
서울고등	8	179	27	372.15	551.15	105,994,412
대전고등	12	195.08	47	413.32	608.4	117,004,446
대구고등	5	58.08	44	166.52	224.6	43,193,949
부산고등	13	355.8	76	1,231.8	1,587.6	305,319,294
광주고등	13	1,149.25	140	1,047.33	2,196.58	422,435,282
수원고등	14	58.98	266	1,340.64	1,399.62	269,167,920
서울중앙지방	17	77.75	64	410.05	487.8	93,811,257
서울동부지방	116	219.1	921	1,402.91	1,622.01	311,936,853
서울서부지방	8	75	99	198	273	52,501,995
서울남부지방	8	253.16	99	474.1	727.26	139,863,006
서울북부지방	17	66.47	330	1,081.58	1,148.05	220,787,235
합계					12,160.07	2,338,563,862

자료 : 대법원

<2026년~2028년 유리문 및 창문 강화필름 부착 사업 대상 법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소요(1년차)	2027년소요(2년차)	2028년소요(3년차)
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 대전고등,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수원고등,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부천지법, 천안지원, 수원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청주지법, 제주지법, 서울가정, 수원가정, 인천가정, 대구가정, 광주가정,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부산동부지원, 부산서부지원	순천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춘천지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장지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해남지원, 군산지원, 장읍지원, 남원지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소	12개소	22개소	39개소
소요예산	**2,339**	**2,288**	**2,031**

자료 : 대법원

○ 법원은 재판 등으로 인해 매일 많은 민원이 방문하는 기관이며 외부침입에 의해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중요시설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그런데, 해당사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2년차, 3년차 계획에 대법원의 소속기관인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 기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종합민원실 등과

같은 일반국민 대상 민원업무부서가 청사에 없으므로 청사 유리 출입문 등에 강화 필름을 부착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법원은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법원 소속기관 청사 건물까지 해당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등기특별회계

《세 입》

(1) 토지대여료, 기타고정자산매각대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토지대여료(51-511)는 「국유재산법」[61]에 따른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국가 토지 임대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는 용도폐지한 등기소의 전산장비·비품 등 기타고정자산 매각대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도 2025년도와 동일한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토지대여료 (51−511)	50	100	100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17	17	−	−

61)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합리적 추계에 의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 대법원은 등기소 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대여료를 징수하고 있음.

해당 수입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이하 “ATM기기”라 한다)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토지대여료, 유휴등기소 부지의 임대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4년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최근 4년간 토지대여료 수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025. 10. 31.)

연 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세부 수납내역
2022	100	48	28	20	27.9	- ATM 기기 등 토지대여(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 19)
2023	100	116	53	63	53.0	- ATM 기기 등 토지대여(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 20)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24)
2024	100	68	50	19	50.0	- ATM 기기 등 토지대여(수납액 8)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 19)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 23)
2025	100	25	25	-	25.0	- ATM 기기 등 토지대여(수납액 8)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수납액 17)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 수입은 매년 800~900만원, 파주등기소 부지 임대료는 매년 1,700~2,000만원, 남대전등기소 부지 임대료는 연간 2,300~2,400만원 수준으로 수납되었음. 2024년 남대전 등기소 부지가 교환 완료[62]됨에 따라, 2025년에는 ATM기기 및 파주등기소

62) 남대전등기소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가 임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22일부터 1년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이 사인과의 국유재산 교환 계약을 통해 2024년

등 토지대여료 약 2,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등기소에 대한 신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예정된 곳은 없으므로, 2026년도에도 2025년도와 유사한 약 2,700만원 수준의 수납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편성된 금액과 같은 1억원이 계상되어, 2025년 수납액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고정자산매각대의 경우 대법원은 매년 동일하게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2023~2025년) 수납실적이 없으며, 2022년도에 187천원[63]이 수납된 사례를 제외하면 징수결정 및 수납 실적이 전무함.

<최근 4년간 등기특별회계 고정자산매각대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기준일: 2025. 10. 31.)

연 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2	17,000	187	187	1.1
2023	17,000	-	-	-
2024	17,000	-	-	-
2025	17,000	-	-	-

○ 특히 대법원 일반회계의 경우 고정자산매각대금이 매년 수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별도의 '고정자산매각대' 세입 항목

5월 남대전등기소의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남대전등기소 사용허가는 2024년 5월 28일 자로 취소되었음.
63) 광주등기소 공작물 매각대금(177,450원) 및 서울남부지법 불용전산비품 매각대금(10,000원)

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반면, 등기특별회계에서는 최근 수납실적이 없음에도 동일 금액을 매년 반복하여 편성하고 있음.

<대법원 일반회계 고정자산매각대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22	-	9,000	9,000	-
2023	-	5,000	5,000	-
2024	-	3,000	3,000	-

○ 이처럼 토지대여료는 최근 실적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기타 고정자산매각대는 수납실적이 없음에도 동일 금액을 반복 편성하는 등 대법원은 정확한 추계 없이 전년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반복적·형식적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실제 세입·세출 균형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최근 실적 및 징수계획에 근거한 합리적 추계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37억원(△43.4%)이 감액된 4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소 신·증축 (1252-411)	9,609	8,518	4,818	△3,700	△43.4

(나)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사업 임차료 예산액 조정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등기소 관리 등' 중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사업 임차료는 리모델링 기간 중 사용할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4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각각 36.3%, 30.8%, 11.5% 수준이었고, 2025년은 20.5%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평균 24.7%에 불과함.

<최근 4년간 등기소 리모델링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2	100	36	36.3
2023	100	31	30.8
2024	100	12	11.5
2025[64]	100	20	20.0

○ 이는 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차료가 등기소별로 평균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수준으로 집행되며, 매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등기소 수가 2~3개소[65] 내외에 불과해 실제 필요한 예산은 3,000만원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매년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되어 온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등기소 리모델링 임차료 세부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리모델링 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시작일	임차료 집행액	연도별 합계
2022	보은등기소	2022. 9. 15.	8,811	36,311
	장수등기소	2022. 9. 14.	8,500	
	인제등기소	2022. 10. 24.	19,000	
2023	문경등기소	2023. 9. 14.	18,000	30,774
	남해등기소	2023. 9. 11.	12,774	
2024	화천등기소	2024. 9. 26.	9,100	11,538
	합천등기소	2024. 9. 19.	2,438	
2025(예정)	예산등기소	2025. 9. 12.(공사 중)	11,600	19,850
	순창등기소	2025. 9. 1.(공사 중)	8,250	

64) 12월 말 기준 집행예정액

65)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등기소 리모델링 비용(20억원)은 실제 등기소 2개소 정도만 리모델링 가능한 수준의 금액임.

대법원에 따르면 2026년의 경우도 연천·산청·담양·양구·청송등기소 중 2~3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해당 임차료가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인건비 이용 재원으로 활용된 것은 임차료가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을 방증함.

<등기소 리모델링 임차료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승인이용 (2023.12.)	등기소 신증축	[210-07] 임차료	△70	등특 인건비	[110-01] 보수	70
승인이용 (2024.12.)	등기소 신증축	[210-07] 임차료	△86	등특 인건비	[110-01] 보수	86

○ 따라서, 대법원은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수요와 실제 소요비용을 근거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된 임차료 예산안 1억원을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24억 3,700만원(△7.3%) 감액된 30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업무전산화 (1334-305)	40,557	33,388	30,951	△2,437	△7.3

(나)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료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액 검토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66]은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서는 '재화·용역 제공자' 범위에 공공기관을

6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이용 가능 단말기로 설치해야 함.

○ 대법원 또한 각급 법원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67]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예: 점자 안내, 음성안내, 높이 조절 등)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 계획>

(단위: 대)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280	75	60	66	40	521

○ 이에 대법원은 2025년도 및 2026년도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 중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사업에 장애인편의기능을 갖춘 무인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임차를 위한 예산(210-07)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은 무인발급기 280대의 3개월 임차비용(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2025년 설치분 1년 임차비용(14억 5,200만원)과 2026년 신규분 75대 3개월 임차비용(9,700만원) 등 총 1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67) 대법원은 국민의 등기 발급 편의 증진 및 등기소 직원의 업무 효율성 강화을 위해 총 523대의 무인발급기를 각급 법원 등기소 등에 설치·운영 중임.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료 예산안 현황>

연 도	예산액	세부내역
2025	363백만원	280대(2025년 신규 도입)*24,000,000원*0.018*3개월=363백만원
2026	1,549백만원	280대(2025년 도입)*24,000,000원*0.018*3개월*4회=1,452백만원 75대(2026년 신규 도입)*24,000,000원*0.018*3개월=97백만원

○ 한편, 대법원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에 도입 예정이었던 280대의 기기는 2025년 내에 설치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무인발급기 개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체결 일정이 2025년 12월 말로 미뤄지면서 2025년 예산액 3억 6,30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보임.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임차 사업 추진 일정>

(기준일: 2025. 10. 31.)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사전 준비		2025. 5. ~ 6.	- 기존 무인발급기 분석 - 장애인 편의기능 반영 표준규격서 개정 - 장애인접근성 소프트웨어(SW) 개발 관련 유관기관 논의 계속
조달청 기능성능시험 (BMT 68))	준비	2025. 7.	- BMT 준비계획 수립 및 평가기관 협의 - 제조사 대상 설명회 개최(표준규격서 및 BMT 절차·일정 등) - 참여 제조사별 신제품 개발 시작
	공고	2025. 8. 5.	- 대한민국법원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에 공고 - 실시계획 및 표준규격서 배포
	실시	2025. 9. 1.~ 19.	- BMT 실시
전자파 적합성 및 환경성능 시험		2025. 9. ~ 2025. 10.	- 전자파 적합성 및 환경성능 시험 진행
SW 적합성 인증절차		2025. 10. 1.	- 장애인접근성 SW 인증 평가 시작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입고 및 시험)

68) BMT : Benchmark Test, BMT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제품(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 "기능과 성능 면에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임.

구 분		일 정	주요 내용
조달청	심사	2025. 10. ~ 11.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절차 착수
	종합 쇼핑몰 등록	2025. 11월 말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완료 목표 - 내부결재 완료 후 조달청에 구매의뢰 예정
	제안공고 및 평가	2025.12월 초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진행 - 수요기관 제안평가 실시
계약 체결		2025. 12월 말	- 계약체결
설치 완료		2026. 1. 28.	- 전국 법원 등기소 설치 완료 목표

자료 : 대법원

○ 또한,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설치 기한(2026년 1월 28일) 내 280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일정, 제조·설치기간 등 변수로 인해 설치 지연 가능성이 높음.

계약 체결 일정, 기기 제작 기간(약 1.5개월), 전국 등기소 순차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종 납품은 2026년 2월 이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법원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편의기능 구비 무인발급기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되, 계약 체결 지연과 제작·납품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설치 완료 시점을 정확히 산정하고, 임차 불가능한 기간만큼의 예산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등기업무 운영지원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7033-300) 사업은 등기부 등·초본 및 법인 인감증명 등 발행경비와 등기신청사건 업무처리비를 지원하고, 등기과·소 건물 유지·보수, 노후 등기장비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2억 6,400만원(5.2%) 증액된 26억 1,55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등기업무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업무운영지원 (7033-300)	26,162	24,086	26,155	1,264	5.2

(나) 업무자료 발간 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추계 및 조정 필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업무자료 발간'은 등기실무와 관련한 사례집·선례집 등 업무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업무자료 발간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69]을 보면, 2021년 3.9%, 2022년 5.3%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후 2023년

69) 해당 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발간 계약금액 현황임.

23.8%, 2024년 77.6%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24년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분모가 줄어든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도에는 실제 발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행정처는 2026년에도 신규 발간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5년간 업무자료발간(법원행정처)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기준일: 2025. 10. 31.)

연 도	예산액(A)	계약금액(B)	집행금액***	집행률(B/A)
2021	253,000	9,889	9,889	3.9
2022	253,000	13,459	13,459	5.3
2023	253,000	60,271*	13,191	23.8
2024	100,000	77,593**	78,688	77.6
2025	100,000	-	45,985	-

* 이 금액 중 47,080천원은 사고이월하여 2024년도 집행 완료
** 이 금액 중 31,608천원은 사고이월하여 2025년도 집행 완료
*** 전년도 계약금액을 이월하여 집행한 금액까지 포함한 해당 회계연도 실집행금액

○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의 원인은 최근 업무자료의 전자화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매년 구체적 검토 없이 전년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 온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2021년 ~ 2027년 각종 업무자료 발간(법원행정처) 내역 및 계획>

(단위: 천원, 기준일: 2025. 10. 31.)

연 도	세부 발간내역	계약금액	비고
2021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총 1,380부, 추가발간)	9,899	
2022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총 2,097부, 추가발간)	13,459	
2023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총 1,965부, 추가발간)	13,191	

연 도	세부 발간내역	계약금액	비고
	동산 · 채권담보등기실무(5,000부, 추가발간)	47,080	발간완료일 2024. 2.
2024	개정 부동산등기법·규칙 및 상업등기법·규칙 해설서 (3,000부, 신규발간)	14,377	발간완료일 2025. 1.
	특수법인등기실무(15,600부, 신규발간)	63,217	발간완료일 2025. 8.
2025	없음	–	
2026 (계획)	없음	–	
2027 (계획)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개정3판) 발간 계획(총 45,000부, 신규발간)	미정	

○ 따라서 대법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연례적·관행적 편성이 아닌 구체적인 발간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특히 2026년도에는 법원행정처의 발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2026년도 예산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예비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예비비(7033-300)는 등기업무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수요가 생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예비비 (7033-300)	-	100	100	-	-

(나) 집행 실적이 없는 예비비 편성 타당성 재검토 필요

○ 대법원은「등기특별회계법」 제6조[70]에 따라 매년 예산안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1994년 등기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예비비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전무하며, 매년 예비비는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 왔음.

○ 최근 10개년 동안 편성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0억원, 2020년 5억원, 2021년 3억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2억원, 2025년에는 1억원이 예비비로 각각 편성되었으나, 모든 회계연도

70) 「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에서 집행률은 0%로 실집행 실적이 없음.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025. 10. 31.)

연 도	예산액(A)	전용 ·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6	1,000	–	1,000	–	–
2017	1,000	–	1,000	–	–
2018	1,000	–	1,000	–	–
2019	1,000	–	1,000	–	–
2020	500	–	500	–	–
2021	300	–	300	–	–
2022	200	–	200	–	–
2023	200	–	200	–	–
2024	200	–	200	–	–
2025	100	–	100	–	–

○ 국회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일반회계에서는 「국가재정법」 제51조[71]에 근거하여 예비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심의를 거친 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회의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건 수	배 정 액
2015	1건	6,512
2017	2건	6,026
2023	2건	3,034

71)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 특별회계 역시 「국가재정법」 제51조제4항[72]에 따라 예비비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필요액을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 배정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함[73].

○ 또한 등기특별회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등기업무 자체도 법령에 근거한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의 근간이 되는 등기제도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법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인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코로나19 관련 재해대책비로 자체 전용하여 대응한 사례가 있음(2020년도에 3억 300만원, 2021년에 1억 9,600만원).

○ 참고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74] 제11조에 따라 예비비 계상이 가능하지만, 해당 특별회계는 2020년 태풍피해 복구,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초과분 등에 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고, 예산안에 예비비를 연례적으로 편성하고

---

7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73) 2024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총 8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전출되어 집행된 사례가 있음.

7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있지 않음.

○ 따라서 등기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매년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2026년도에도 지속할 필요성은 낮으며, 예비비 편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　출》

(1)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사업은 민간 법률구조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을 통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를 실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 38억 7,900만원 대비 1억 6,600만원(△4.3%) 감액된 3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3,879	3,879	3,713	△166	△4.3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3,548	3,548	3,548	-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166	166	83	△83	△5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165	165	82	△83	△50.3

(나) 보조사업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3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5% 이하 법률보호취약계층(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자, 재산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가족관계미등록자, 보호대상아동,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비용을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한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사업은 가사사건 위주로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125% 이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구성원에 대해 자원봉사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고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사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사업 지출계획안은 각각 8,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두 내역사업의 소송대리 1건당

사업비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사업 대비 과다하다는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임.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내역사업별 사업비 비교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소송대리 건수	17,325	22,824	24,514
	총사업비	2,675	2,675	3,548
	건당 사업비	**0.15**	**0.12**	**0.1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소송대리 건수	199	182	179
	총사업비	166	166	166
	건당 사업비	**0.83**	**0.91**	**0.9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소송대리 건수	143	143	146
	총사업비	165	165	165
	건당 사업비	**1.15**	**1.15**	**1.13**

자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 이처럼 사업 목적과 구조가 유사한 내역사업 간 비교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 대상의 차이 등 법률구조단체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사업의 경우 법률보호취약계층 중 중위소득 125%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사업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폭넓게 취약계층의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업지원 사업은 가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가정구성원 등 특정 취약계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실제 법률구조단체별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법률구조사업 수혜자에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구조단체별 수혜자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법률구조단체별 법률구조사업 실적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관계미등록자	25	22	39	35	14	21
	보호대상아동	10	9	18	14	2	11
	소년소녀가장	1	1	14	2	–	2
	소액임차인	1,283	1,082	984	1,288	1,693	1,508
	북한이탈주민	115	101	61	66	41	34
	개인회생파산신청자	15,333	15,872	13,252	18,436	19,795	14,336
	범죄피해자(재산)	2,411	2,847	2,957	2,983	2,969	2,314
	계	19,178	19,934	17,325	22,824	24,514	18,226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일반 (사회소외계층)	78	85	79	66	82	58
	다문화가정/이주외국인(난민 포함)	111	106	79	80	70	43
	북한이탈주민	46	38	41	36	27	27
	계	235	229	199	182	179	128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52	47	48	51	50	49
	취약계층가정	102	101	95	92	96	98
	계	154	148	143	143	146	147

자료: 대법원 제출

○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법무관 또는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하는 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재단 수행변호사단에서 선임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특수한 성격의 소송과 폭넓은 전문분야까지 법률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의 법률구조단체간 비교 >

항 목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 주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재단법인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법인
운영 방식	정부 예산 지원(수지차보조) 및 자체 수익 사업 운영	로펌 기부금 및 개인 후원금 기반의 민간 중심 운영	정부 예산 지원(수지차보조) 및 자체 수익 사업 운영
주요 업무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의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주로 임금, 개인회생.파산 사건(25.9 기준 전체 사건 대비 62%) 수행)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 소원 등 법률구조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 공익 법률지원 활동	-가사사건 특화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지원 대상	소득 기준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 및 협약대상자 (중위소득 125%이내 저소득층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난민, 북탈민, 자립준비청년, 미성년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 소득 기준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 및 협약대상자 (중위소득 125%이내 저소득층 등)
지원 방식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비용 지원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단체 구성 (25.9)	-소속변호사(113명) -공익법무관(32명)	-전국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단(총 1,468명)	-백인변호사단(자원봉사자 변호사, 총 560명)
대표 서비스	-소송대리(개인회생.파산, 범죄피해자, 장애인, 불법사금융피해자, 임금체불, 전세사기피해자 등) -법률상담, 법교육활동 등 ※소송대리의 경우 공단 규칙상 중위소득 125% 이상 유료, 소가 3억 이상 불가(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제외)	-소송구조(수급자, 북탈민,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난민, 양육비이행확보, 청년부상제대군인, 빚대물링방지법률지원 등)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법개선을 위한 연구 등	-소송구조(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법적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법률상담, 화해조정 등
구조 단가	승소가액에 따라 산정(평균 14만원), 패소시 변호사보수 받지 않음	사건 유형 및 난이도 따라 차등지급(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 포함하여 30~150만원)	본안 120만원, 본안 외 100만원

자료: 대법원 제출

○ 참고로 유사하게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국가사업인 성평등가족부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내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내역사업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에서도 법률구조단체별로 사건당 사업비 차이가 존재하나, 해당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별다른 감액조정 없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2024년 법률구조단체별 사건당 사업비 비교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법률구조 건수 (A)	사업비 (B)	사건당 사업비 (B/A)
대한법률구조공단	803	900	1.1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59	402	1.5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25	150	1.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31	53	1.7

자료: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재작성

○ 따라서 각 법률구조단체별 특수성과 법률구조 성과를 고려할 때, 법률보호취약계층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 규모를 2025년 계획 규모 수준으로 조정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소년보호 등 지원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 사업은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지출계획 92억 700만원 대비 4억 4,300만원(△6.9%) 감액된 8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내역사업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전년도 지출계획 31억 6,100만원 대비 3억 1,000만원(△9.8%) 감액된 2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	9,207	9,207	8,764	△443	△6.9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3,161	3,161	2,851	△310	△9.8

(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지출계획안 조정 필요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대상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 9,000만원 규모의 사업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계	37,893	430	3,161	2,851	11,792	11,240	8,434
ㅇ토지매입비	8,393	–	2,518	2,518	3,357	–	–
ㅇ공사비	26,065	–	–	–	7,819	10,426	7,820
ㅇ시설부대경비	3,435	430	643	333	616	814	614
– 기본설계비	734	425	309	–	–	–	–
– 실시설계비	637	–	319	318	–	–	–
– 감리비	2,004	–	–	–	601	802	601
– 시설부대비	60	5	15	15	15	12	13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사업은 2024년 계획액 4억 3,0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집행률 1.6%)하고 4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9월말 기준 2025년 계획현액 35억 8,400만원 중 6억 1,700만원을 집행(집행률 17.2%)하는데 그쳐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이는 전반적인 사업 지연에 따른 결과로, 설계용역 계약 체결이

2024년 11월 말에 이루어지고, 2025년 기본설계 중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2024년~2025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2024년				2025년			
	계획액	집행액	이월액 (A)	집행부진 사유	계획액 (B)	계획 현액 (A+B)	집행액 (9월말)	집행부진 사유
토지 매입비	–	–	–		2,518	2,518	–	도시계획변경 및 부지분할 협의 중
기본 설계비	425	7	418	설계용역계약 2024. 11. 체결	309	727	610	설계 중지 (도시계획 심의)
실시 설계비	–	–	–		319	319	–	설계 중지 (도시계획 심의)
시설 부대비	5	–	5	설계용역계약 2024. 11. 체결	15	20	7	
합계	430	7	423		3,161	3,584	617	

자료: 대법원

○ 당초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부지의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용도지역 안에 바닥면적 합계가 3,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75] 그러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계획 상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 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닥면적 합계는 6,063㎡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대법원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공공청사'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을 하게 된 것임.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여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요청을 하였고, 2025년 7월 15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었으며,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건부 의결[76]이 되었음.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진행 경과 >

일자	추진내용
2024. 7. 2.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계획 수립
2024. 7. 30.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공고
2024. 11. 26.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계약 체결
2025. 4. 15.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요청(법원→여주시)
2025. 6. 12.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 7. 15.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여주시→경기도)
2025. 10. 2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조건부 의결)

자료: 대법원 제출

○ 이렇게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기본설계용역은 4월부터 6개월 이상 중지되고 있는 상황임. 당초 대법원은 기본설계를 2025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실시설계

76) 2025년 10월 24일 개최된 제12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① 기획재정부와 토지 분할 협의를 완료할 것, ② 설계 시 인도를 확보할 것, ③ 부지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하였음.

용역 선금에 해당하는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5년 10월말까지 기본설계용역도 완료되지 않고 6개월 이상 기본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시설계비 집행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시설계가 1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2025년 연내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6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77]에 따라 실시설계 착수 전 기획재정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 증가 사유 발생으로 1년 이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78]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또한 토지매입비 역시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2025년 10월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토지분할 협의를 신속히 하여 연내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7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7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8조(수시조정 원칙)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대법원은 동 사업 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총사업비 조정 협의 절차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계획안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민원서비스 개선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지출계획액 322억 3,700만원 대비 7억 5,100만원(△2.7%) 감액된 31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내역사업인 '민원환경개선' 사업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순번발행기[79]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 23억 8,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32,237	32,237	31,486	△751	△2.7
민원환경개선	-	-	2,381	2,381	순증

(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의 법정 시한 내 도입을 위한 집행 철저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원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이

79)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순번발권기를 의미함.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80]

○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종합민원실 등 주요 민원 부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119대를 설치하기 위해 23억 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2026년도 민원환경개선 사업 산출내역 >

금 액(백만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381	■ 2,381백만원 = 20백만원 × 119대 - 119대 = 1대(대법원) + 7대(고등·특허법원 각 1대) + 54대(지방법원 각 3대) + 9대(가정·행정법원 각 1대) + 6대(회생법원) + 22대(국설치 지원 각 2대) + 20대(사무과 지원 각 1대)

자료: 대법원 제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설치단가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1대, 창구번호 등 표시기 7대, 창구 호출기 7대 등으로 구성됨.

8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 바. (생 략)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견적 세부내역 >

(단위: 원)

품목	수량	단가	총액(부가세 포함)
27인치 장애인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1	8,000,000	8,800,000
일체형 24인치 표시기(창구번호, 호출번호 등)	7	1,000,000	7,700,000
천장형 브라켓 설치공사	7	200,000	1,540,000
호출기(호출, 재호출, 임의호출, 타창구 호출 기능)	7	170,000	1,309,000
설치 등 공사비용	1	1,000,000	1,100,000
합계			20,449,000

자료: 대법원 제출

○ 장애인의 접근성 및 동등한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 기한 내 미이행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이를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조달청의 표준행정 소요일수와 실제 설치사례를 고려할 때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81]

구체적으로 조달청의 물품 경쟁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상 계약 체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를 도입한 사례에서도 동 사업보다 설치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부터 설치완료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82]

81) 이에 대해 대법원은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급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임.

82)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8개동 동주민센터 장애인 겸용 순번대기표 구매 계약의 경우 2024년 5월 14일 사전규격검토 후 2024년 5월 22일 입찰공고, 2024년 6월 11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구매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물품구매계약 절차 개시로부터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17개 동 주민센터 접근성 보장 선번대기시스템 구입 및 설치 계약의 경우 2024년 11월 27일 사전규격검토 후 2024년 12월 3일 입찰공고, 2024년 12월 23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2025년 4월 22일 최종 설치가 완료되어 5개월 가량 소요되었음.

<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

계약방법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목표행정소요일수
수의계약			26일	21일
경쟁계약	국내입찰	최저가입찰	41일	21일
		적격심사	71일	31일
		협상계약	89일	69일
		2단계입찰	89일	69일
		규격·가격동시입찰	74일	64일
		종합낙찰	56일	26일
	국제입찰	최저가입찰	84일	54일
		적격심사	114일	64일
		협상계약	129일	69일
		2단계입찰	129일	69일
		규격·가격동시입찰	114일	64일
		종합낙찰	99일	59일

주 1)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는 3차낙찰을 기준으로 함
2) 목표행정소요일수는 1차낙찰을 기준으로 함
자료: 조달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신설 시기(2021년 7월 신설, 2023년 1월 시행) 및 단계적 적용 시기(2026년 1월)를 고려할 때 대법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나, 동 사업과 같은 취지인 '전국 법원 등기소 장애인 편의기능 구비 통합무인발급기 구매·설치' 사업 예산을 2025년 등기특별회계에 편성하면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지 않아 법정 시한까지 해당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도입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사업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집행이 지연되어 과태료 부과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동 사업과 같이 법정 시한이 정해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준비를 면밀히 하여 법정 시한을 넘겨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사업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지출계획액 138억 9,400만원 대비 9억 7,500만원(7.0%) 증액된 14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내내역사업인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 지출계획액 1억 5,0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96.0%) 증액된 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지출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13,894	13,894	14,869	975	7.0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1,530	1,530	3,303	1,773	115.9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150	150	294	144	96.0

(나) 개원 시기에 맞추어 적정 수준의 운영비 편성 필요

○ 개인도산 상담센터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이해도가 높은 파산관재인,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법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법원의 도산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취약채무자 등에게 무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8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 1일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될 예정임.[84] 회생법원 신규 개원 및 개인도산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2026년도 계획안에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및 상담센터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회생법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수원	수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도산 상담센터별 일평균 운영시간 >

(단위: 시간)

연도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합계
2025년	18	3.2	4	2	3	3	0	33.2
2026년(안)	18	4	6	3	4	3	2	40

주) 별도의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대구, 울산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내 사법지원센터에서 개인도산 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자료: 대법원 제출

○ 그런데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신규 개원 예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대전 개인도산 상담센터 및 대구 개인도산 상담센터는 2026년 3월 1일 이후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고,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 회생법원이 개원된 이후부터 개인도산 상담센터가 운영될 예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과 상담센터 운영비를 12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실제 운영기간 대비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음.

< 2025년 및 2026년도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 사업 산출내역 >

2025년 계획	2026년도 계획안
■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 120백만원 = 25,000원 × 1일(20시간) × 20일×12개월 ■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비 – 24백만원: 6개 센터, 12개월 ■ 외부연계기관과의 간담회 및 상담위원 교육: 6백만원	■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 240백만원 = 25,000원 × 1일(40시간) × 20일 × <u>12개월</u> ■ 개인도산 상담센터 운영비 – 48백만원: 7개 센터, <u>12개월</u> ■ 외부연계기관과의 간담회 및 상담위원 교육: 6백만원

자료: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3개 회생법원의 개원 시기에 맞추어 개인도산

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및 운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1. 법원 조직도

(2025. 8.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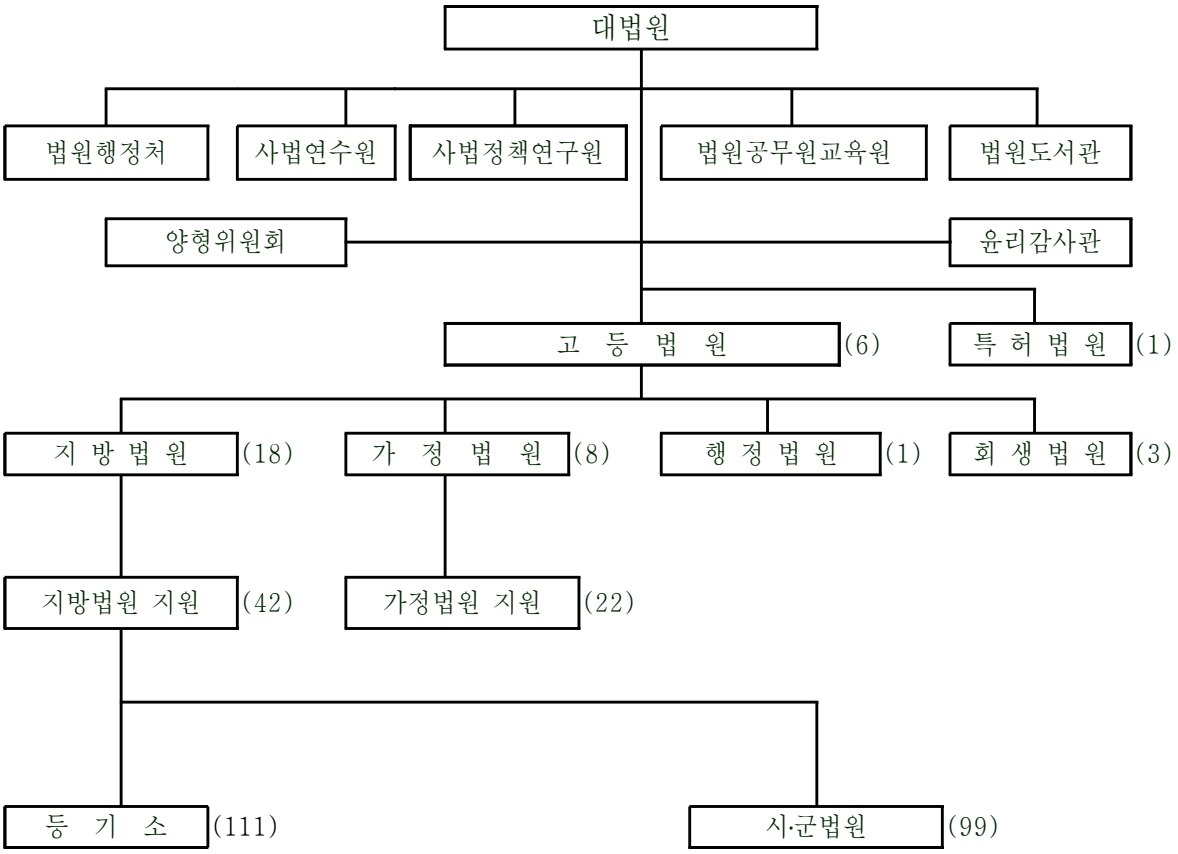

※ 각급 법원 현황

1. 총 법원 수 : 102 [대법원, 고등법원 6, 특허법원 1, 지방법원 18, 가정법원 8, 행정법원 1, 회생법원 3, 지법지원 42, 가정지원 22]
2. 기관 : 7 [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사법정책연구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법원도서관1, 양형위원회1, 윤리감사관1]
3. 시·군법원수 : 99
4. 등기소: 111 [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정원

가. 법 관

(2025. 10. 01. 기준)

직 위 \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 현원	정 원 외 법 관
대법원	대법원장	1	1		
	대 법 관	13	13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2	2		
	재판연구관	100	99	- 1	
고등법원	원 장	7	7		사법연수원장: 1
	부장판사	372	51	- 16	
	고법판사		227		사법연수원 교수: 3
	판 사		78		사법연수원 교수: 12
지방법원	원 장	30	30		법원행정처 차장 : 1
	지 원 장	42	42		
	부장판사	2,751	1,303	- 168	사법연수원 교수 : 13
	판 사		1,280		
미보임 신임판사			153[85]	+ 153	
합 계		3,318	3,286	- 32	정원 외 법관(30명)을 포함한 법관총원: 3,316명

※ 2025년도 임용 법관
- 전담법관 : 4명(위 표상 인원수 반영)
- 일반법조 : 153명(위 표상 인원 수 반영)

※ 2025년도 퇴직 법관 : 90명
- 고법원장 2명, 지법원장 7명, 고법부장 6명, 지법부장 50명, 고법판사 12 명, 판사 13명

85) 2025. 9. 25.자 신규임용 법관 153명

나. 법원공무원

(2025. 9. 30.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정원대비현원
경력직	일반직		13,744	14,446	702
특 수 경력직	정무직		3	2	-1
	별정직	사법연수생	2	0	-2
		비서(관)	34	26	-8
		법원보안관리대원		3	3
일반직 또는 별정직			714	573	-141
임기제		일반임기제		293	293
		전문임기제	797	855	58
합 계			15,294	16,198	904

※ 정무직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윤리감사관임
※ 청원경찰 : 정원 40명, 현원 34명
※ 일반직의 경우, 별도정원(파견, 육아휴직, 교육훈련 등)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어, 정원과 현원의 차이 발생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운영

3. 전국법원 사건통계

(2023년 1월～2025년 8월, (단위: 형사(명), 그 외 사건(건))

구 분	연도	2025년 8월(8.31.기준)			2024년			2023년		
	심급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민 사 (본안)	접수	531,697	37,205	7,792	805,366	59,475	14,958 (13,026)	780,071 (780,064)	58,703	12,152 (12,150)
	처리	500,443	39,108	10,551	786,085	59,819	26,325 (13,191)	768,886 (768,871)	58,382	14,588 (12,381)
	미제	410,997	50,578	4,147	379,893	52,494	6,907	360,890	52,873	18,285 (4,275)
	상소	34,484	7,426	-	52,942	11,436	-	53,070	11,033	-
형 사 (공판)	접수	149,298	52,459	19,618	239,981	82,162	24,889	236,981	79,453	21,102
	처리	151,617	54,479	17,269	228,492	80,755	24,044	230,927	74,489	20,419
	미제	129,717	47,304	7,859	131,981	49,313	5,512	120,377	47,916	4,660
	상소	67,502	16,804	-	104,187	24,617	-	104,099	22,301	-
가 사 (본안)	접수	25,661	2,727	449	40,160	4,493	724	40,002	3,972	701
	처리	25,710	2,745	408	39,440	4,345	745	40,517	4,240	701
	미제	25,636	2,782	203	25,700	2,800	162	25,043	2,658	183
	상소	2,023	369	-	3,258	562	-	2,887	549	-
행 정 (본안)	접수	13,231	4,171	2,443	20,878	7,303	4,011	21,953	7,184	3,526
	처리	13,260	4,682	2,651	21,907	7,280	3,634	21,295	6,874	3,677
	미제	16,644	5,008	1,470	16,679	5,520	1,678	17,714	5,499	1,303
	상소	4,117	2,168	-	6,974	3,759	-	6,959	3,383	-

주 : ( )내의 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4. 성과지표 현황

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개	2개	2개	-	-	1개	1개	1개 (50.0%)
		100%	-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 분야		정량/ 정성	성격	
전략목표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재판활동지원	①전체 사건처리율	1.0	일반재정	96.0(%)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국민의 편익과 사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사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사법정보화운영	①사법정보화 운영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수)	1.0	정보화	82.4(%)	정성	결과	